

■ 판례 동향

RF 제너레이터에 관한
품목분류 판례해설

■ 품목분류 동향

관세율표
제8541호의 범위

■ 개정법령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2024년 마지막 날 한·필리핀 FTA 발효 ... ‘자동차·부품’ 무관세 수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발행인 이종우

편집인 최홍식

총괄 나영주 lordme@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자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5년 1월 6일(통권 제2113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2024년 마지막 날 한·필리핀 FTA 발효 ...
'자동차·부품' 무관세 수출

06 Weekly News

14 전문가 칼럼

김우중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

관세행정실무해설

- 20** 관세평가실무해설
연속거래에서의 과세가격 및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
- 28** 질의응답사례
진통제 특수통관

판례동향

- 30** 관세판례해설
RF 제너레이터에 관한 품목분류 판례해설

품목분류동향

- 41** 품목분류해설
관세율표 제8541호의 범위
- 63** 세번 바로잡기
녹차
- 65** 상식 밖의 상품학
스프레이형 거품 세제 '폭발 위험'

최신개정법령

- 69**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공포 외
- 70**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외
- 76** 대통령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외
- 85**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
- 92** 고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외
- 96** 입법예고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외
-

2024년 마지막 날 한·필리핀 FTA 발효 … ‘자동차·부품’ 무관세 수출

한·ASEAN FTA 및 RCEP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2025년을 단 하루 앞둔, 작년 12월 31일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향후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對필리핀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필리핀 FTA는 공식 협상이 시작된지 5년 6개월만에 발효된 것으로 12월 31일 1년차 관세 철폐가 즉시 적용됐으며, 다음날인 올해 1월 1일부터 2년차 관세가 연달아 철폐됐다. 이로써 우리 수출입 업계가 체감하는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약 1억 2,000만 명을 보유한 필리핀은 2023년 기준 한국의 15위 교역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필리핀은 2024년 5.8%, 2025년 6.1%의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대표적인 수출 유망 시장으로 꼽힌다. 신흥국 평균 경제성장이 4.2%인 점을 고려하면 주요 경제권 대비 높은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작년 12월 30일 발표한 ‘한·필리핀 FTA 발효에 따른 수출 유망상품 및 협력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전체 품목 중 96.5%를 관세 철폐·감축해 우리 기업의 필리핀에 대한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양국은 한·ASEAN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교역 개방의 문을 연 바 있다. 필리핀은 이번 FTA를 통해 발효 중인 ASEAN·RCEP 대비 양허수준을 7.3%p(+821개) 추가 확대했다. 한국의 경우 기존(94.2%) 대비 양허수준을 0.6%p(+85개) 추가 확대했다.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의 관세는 30%에서 매해 6%씩 인하돼, 5년 내 철폐된다. 다만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전복 등 우리 측 민감품목은 제외됐다.

● 한·ASEAN FTA, RCEP 대비 한·필리핀 FTA로 추가 양허된 품목 ●

한국 양허		양허 단계	필리핀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승용차(8%), 화물자동차(10%) 등	11	즉시 철폐	344	승용차(5%), 화물차(5%), 기어박스(5%), 제동장치(5%) 등
직물제의류(5%), 폴리에스테르사(5%) 등	27	3년	-	-
바나나(30%), 잼·과실젤리(5%) 등	33	5년	232	전기자동차(5%), 서스펜션(10%) 등
기타채소(5%), 바나나(플랜틴)(30%)	3	10년	-	-
제재목(5%), 과일주스(5%) 등	11	15년	245	냉동어류(5%), 공기조절기(5%), 냉장고(5%), 고추(5%) 등
	85	합계	821	
계(11.2%), 냉동오징어(5%) 등	15	관세 감축	44	자기제 식탁용품·주방용품(12%), 기타 문구류(15%), 기타조명기기(20%) 등

출처 : KOTRA ‘한·필리핀 FTA 발효에 따른 수출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KOTRA는 한·필리핀 FTA 발효로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따른 한국의 수출 유망 품목을 제시했다. 우선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 내연기관차, 화물차를 비롯해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되는 전기차, 자동차부품이 수출 유망 품목에 올랐다. 필리핀은 ASEAN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국이다. 한·필리핀 FTA 발효로 자동차부품 기존 관세율 5%에서 0%로 즉시 철폐돼 가격경쟁력 제고로 한국산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필리핀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EVIDA)을 실시하고 있어 5년 내 관세 철폐 예정(관세율 5%→0%)인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도 시장점유율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어박스, 제동장치 등 일부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됐고, 완충기·서스펜션 등은 5년 내 철폐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필리핀 자동차 부품 시장이 2023~2030년간 연평균 성장률 9.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한 햇빛과 잦은 침수, 열악한 도로 상태, 높은 에어컨 사용량으로 내구성과 환경 저항력이 높은 부품의 수요가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인프라 개발 정책 차원에서 필리핀 내 3개 스마트시티 개발을 목표로 내걸고 있어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기업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에너지 플랜(PEP)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2023년 22%에서 오는 2030년 35%로 증가해 관련 분야 프로젝트 발주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한·필리핀 FTA의 경우 수출 유망 가공식품, 섬유·의류, 자동차 등 일부 분야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한·ASEAN FTA보다 완화돼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혜택을 적용받기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한·ASEAN FTA는 식품류에 관해 일부 원재료가 필수로 역내산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섬유·의류 품목 또한 재단·봉제와 같은 추가 가공공정 요건이 있어 역내 국가에서 재단·봉제 공정을 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통한 FTA 적용만 가능했다. 하지만 한·필리핀 FTA는 의류 품목의 역내 공정수행 요건 일부가 삭제됐으며, 고추장·조제분유·빵 등 일부 품목의 역외산 재료 사용이 일부 허용됐다.

협정	닭으로 만든 조제품(제1602.32호) 원산지 결정기준
한·필리핀 FTA	2단위 세번변경기준
한·ASEAN FTA	역내가치포함비율이 FOB 가격의 60% 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RCEP	2단위 세번변경기준

출처 : KOTA 통상협력팀 '한·필리핀 FTA 실무활용 가이드'

KOTRA 이지형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ASEAN 국가 중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다섯 번째로 필리핀과 개별 FTA를 발효했다. 한·필리핀 FTA 발효로 양국 간 관계가 돈독해질 뿐 아니라 ASEAN과의 결속도 강화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 김성은 기자 |

올해 간이정액환급대상 4,574개로 확대 ···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추가

기재부·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개정

올해 1월 1일부터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이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에 새롭게 추가됐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전년 대비 32개 늘어난 4,574개로 확대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 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매년 약 7,000여 개 중소기업이 연간 약 1,000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재부가 개정(2025. 1. 1. 시행)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 신규 지정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

연번	세 번	세번명 [품목]	환급액(원)
1	제1212.21-1010호	김(건조한 것)	30
2	제2811.29-1000호	그 밖의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일산화탄소)	20
3	제2836.99-2000호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10
4	제2933.59-2000호	피리미딘, 그 염과 그 밖의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10
5	제3824.10-0000호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30
6	제3917.32-1000호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0
7	제5311.00-2000호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종이실의 식물(대마의 것)	30
8	제8207.60-1000호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리머(reamer))	30
9	제8208.10-0000호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금속 가공용)	30
10	제8429.52-1011호	엑스캐베이터(excavator, 굴삭기)(신품)	30
11	제9020.00-1000호	가스마스크	30

출처 : 관세청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작년보다 환급률을 상향해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주간 관세무역정보 별책부록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1월부터 시행 「통상변화대응법」, 지원대상 확대하고 요건은 완화

FTA로 피해 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IPEF, DEPA 등 신통상 협정까지 지원 확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와 동시에 지원 범위는 확대되고 지원요건은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융자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공급망, 디지털 등 최근의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상변화대응법」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이에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 FTA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확대됐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작년 12월 26일 고시했다.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하고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혁신 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지원요건도 완화돼 지원대상 기업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받은 통상 영향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변화대응 지원 전반과 관련된 상담과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하구현 기자 |

●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별표 : 통상조약 등의 범위) ●

구분	대상 협정
자유무역 협정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국 FTA, 한·튀르키예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중국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 한·영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신통상 협정	한·싱가포르 DPA(디지털동반자협정),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한·필리핀 FTA 발효 따른 특정품목 수입 급증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정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작년 12월 31일 발효됨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 시 '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 31일 발효된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 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불공정 무역조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는 필리핀을 FTA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에 포함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필리핀산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 시 관세인하 정지, 긴급관세 부과 등을 통해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했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상대국으로부터 잠정FTA 세이프가드 적용 시 동일한 혜택을 받아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리핀을 잠정FTA 세이프가드 조사 시 그 신청 내용의 입수 방법과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을 관보 게재하는 대상국에 포함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잠정세이프가드조치 적용 전 그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필리핀을 FTA 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향후 우리 기업들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필리핀을 글로벌(다자 간) 세이프가드 적용 배제 대상국에 포함하고 필리핀산 품목이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출기업들도 필리핀으로부터 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 시 동등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FTA 세이프가드조치는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 간 발동이 가능하고, 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는 WTO 협정에 근거해 WTO 회원국들 간 발동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관세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돼 양 당사국 간 보다 원활한 무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필리핀 양국은 FTA 발효에 따른 무역·투자 확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작년 발효에 합의했으며, 이번 무역구제 관련 개정사항도 발효일인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했다.

| 하구현 기자 |

韓·베트남 AEO MRA 체결 … 물품 검사비용 축소, 수입신고 서류 제출 생략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작년 12월 2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무역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한 기업으로 AEO MRA는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해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24개국과 AEO MRA를 체결 중이며 이번 베트남이 25번째 체결국이다.

對베트남 수출액 535억 달러 중 약 57%에 해당하는 303억 달러를 AEO 기업들이 담당한 만큼 이번 양국 간 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호주, 멕시코 등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AEO MRA를 체결하게 됐다.

베트남의 응웬 반 터 관세총국장은 “이번 AEO MR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양국 AEO 기업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면서 “韓·베트남 AEO MRA 체결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식약처·수품원, 필리핀産 수산물 전자증명시스템 공동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1월 2일부터 필리핀産 수산물에 대한 전자증명시스템을 공동 활용한다.

이는 양 기관이 작년 1월에 체결한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 그동안 식약처와 수품원은 각 기관에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각각의 국가에 대해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해 왔지만, 올해부터 필리핀 수산청이 구축한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함께 활용한다. 양 기관은 필리핀 사례를 시작으로 전자증명시스템 공동 활용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 전자증명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별 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와 수산 생물의 질병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수품원은 “통관 시간·비용으로 절감 등 영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수입 수산물 관리는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산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수출입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중기부, 중소 수출 확대·해외 진출에 6,196억 원 투입

전년 대비 45% 증액 규모로 12개 수출지원사업 시행 및 테크서비스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에 올해 총 6,196억 원을 투입하기로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오프라인 수출부터 현지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가 작년 12월 23일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총 12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원사업 9개와 소상공인 특화 지원사업 3개로 구분된다.

중기부는 우선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중소기업 수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 수출은 2023년 4분기부터 연속 4분기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환율 및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 불확실한 대외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특히 수출자금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수출기업이 마케팅, 디자인,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12개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전체 예산은 작년 4,272억 원 대비 1,924억 원(45%) 늘어난 6,196억 원이다.

또한 제품 중심의 기존 수출지원체계를 테크서비스 수출로 확장한다. 테크서비스는 디지털·AI 기술, 전문 지식과 융합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ICT 기반 서비스를 뜻한다. 최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테크서비스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테크서비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수단은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테크서비스 수출기업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수출 바우처가 140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기존 수출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이용, 현지화(사용자인터페이스, 사용자경험 개선 등) 등 테크서비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라 수출 환경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 성공 기업에 수출바우처 한도를 상향(20%)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해외 수출 규제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간이심사를 통해 지원절차를 단축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페스트트랙’ 대상에 미국 FDA 화장품 인증 등을 추가한다. 모든 인증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기업당 인증지원 신청 건수 상한(현재 4건)의 경우 소액인증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 최근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고환율 등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에 수출자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김성은 기자 |

‘초콜릿 카드뮴 규격’ 신설 및 ‘페나세틴’ 식품 금지 성분에 추가 등 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초콜릿 제품의 중금속 기준과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년 12월 24일 행정예고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초콜릿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코코아분말과 초콜릿류의 카드뮴 규격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코코아분말 2.0mg/kg 이하, 초콜릿 0.8mg/kg 이하, 밀크·화이트·준초콜릿 및 초콜릿가공품 0.3mg/kg 이하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초콜릿 제품의 카드뮴 검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어린이 기호식품인 초콜릿 섭취량이 증가하는 등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격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0~2019년간 일일 어린이 초콜릿 섭취량은 1~2세의 경우 1.75g에서 4.71g로, 3~6세는 3.67g에서 4.97g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코코아분말의 카드뮴 규격은 2.0mg/kg 이하, 초콜릿류는 코코아고형분 함량에 따라 0.3~0.9mg/kg 이하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기준과 유사하게 규격화했다.

아울러 수입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페나세틴을 ‘식품 중 검출되는 안 되는 물질’에 추가하는 한편, 나프로파마이드 등 137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했다. 페나세틴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Group I)로 분류한 물질로, 현재 국내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간경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등이 담겼다. 특히 신설되는 ‘간경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간경변으로 인해 소화·흡수와 대사 기능이 저하돼 있는 환자의 영양부족이나 불균형이 개선되도록 적정 수준의 단백질과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측쇄아미노산(BCAA·아미노산 중 류신, 이소류신, 발린), 아연 등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식육간편조리세트의 황색포도상구균과 장염비브리오 검사 시 시료수를 기존 1개 검사에서 5개 검사로 확대한다. 미생물 특성상 제품 중 오염이 불균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도 하나의 시료만 검사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검사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어 통계적 개념을 도입해 이를 과학적·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주요 수출기업들, '올해 수출 1.4% 증가 그칠 것' 전망

정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증가세를 보이던 우리 수출이 올해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등 12대 수출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2025년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올해 수출이 작년 대비 1.4% 증가에 그칠 것으로 답했다.

기업들이 내다본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증가하는 업종은 바이오헬스 5.3%, 일반기계 2.1%, 석유화학·석유제품 1.8%, 전기전자 1.5%, 선박 1.3% 였으며, 감소하는 업종은 자동차·부품 △1.4%, 철강 △0.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수출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 39.7%, 관세부담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30.2%, 원자재·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11.1% 등을 지목했다.

한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요인으로 신제품 개발 등 제품 경쟁력 강화 27.6%,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 27.6%, 수출국가 다변화 18.4% 등을 꼽았다.

수출을 통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수준인 수출 채산성 대해 기업들은 32.6%가 작년에 비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해 개선될 것으로 보는 기업(20.6%)보다 많았다. 반면 절반에 가까운 (46.8%) 기업은 내년 수출 채산성이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채산성 악화 전망이 많은 업종은 선박 50.0%, 전기전자 45.4%, 자동차·부품 42.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수출 채산성 악화 요인으로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관세부담 증가 46.9%, 수출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단가 인하 20.5%, 원자재 가격 상승 12.2%, 원화평가 절하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 12.2% 등을 지적했다.

수출 부진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기업들은 수출시장 다변화 47.6%, 운영비·인건비 등 비용 절감 23.8%, 환율리스크 관리 강화 15.9% 등을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여건이 제일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기업이 미국 48.7%, 중국 42.7%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한경협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美·中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기업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우선순위로 외환시장 안정화 31.5%,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피해 최소화 22.8%, 원자재 수입 관련 세제 지원 18.0%, 원자재 등 안정적 공급대책 11.4%, 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11.0%) 등을 꼽았다.

| 하구현 기자 |

검역본부, 4개 식물검역 실험실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와 인천공항, 영남, 호남지역본부의 검역 병해충 정밀검역 실험실이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이로써 국제표준실험실 수준의 검역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무역 시장에서 수출입 검역 처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자국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국제표준실험실에서 발급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도 있다.

인정항목은 식물검역에서 중요한 세균, 바이러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법이며, 2023년 3월에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2024년 11월에 인천공항지역본부, 12월에 영남지역본부 및 호남지역본부 3개 지역본부가 인정을 받았다.

검역본부는 “국제적 수준에 맞는 검역 체계를 갖추기 위해 2021년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실험실 시설과 장비를 정비했으며 시험절차를 마련하고 규정을 개정했다”며, “그 결과 KOLAS의 숙련도 평가를 통과해 시험 분석 능력을 검증받고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완료 … 중앙아시아 물류 기대감 ↑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 시행한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월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 다시 철도 운송으로 총 6,044km를 이동해 출발 19일 만인 12월 29일에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작년 6월 1차 시행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씩 2~4차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중국·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역에서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등 행정절차를 개선해 운송기간을 8일 이상 단축하고, 지체 기간에 발생하는 화물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CES 2025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 참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4일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한국관이 문을 열었다. 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전시회로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36개 기관과 협업해 445개사 규모의 통합한국관을 구성했다. 통합한국관 주요 전시분야는 생활가전(18%), 디지털헬스(17%), 인공지능(16%), 스마트 홈(12%) 순이다. CES 2025는 ‘Dive In(빠져들다)’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 정신건강 개선, 효율적인 생산을 해결하는 솔루션이 제시되는 한편,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지속 가능성 등이 핵심 이슈로 다뤄진다.

2025년 韓 무역, 새로운 도전 속 흑자기조 이어갈 듯 -2024년 수출입 평가 및 2025년 전망-



김 우 종 |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

2024년 우리 무역업계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11월까지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6,224억 달러, 수입은 2.1% 감소한 5,771억 달러, 무역수지는 4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이뤘던 2022년(11월까지 6,287억 달러)을 바짝 뒤쫓은 셈이다. 지난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세계 경기 회복세 지연, 중동지역 전쟁으로 인한 물류비 폭등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美·中 갈등 심화 등 무역환경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수출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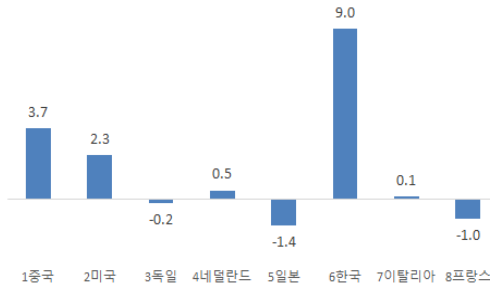
수출을 견인한 것은 주력 IT 품목들이다. 2023년 위축됐던 글로벌 IT 수요가 회복하면서 기저효과와 함께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수출이 크게 늘었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단가 회복과 인공지능(AI) 산업 확장,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45.4% 성장했다.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반도체 수출 증가분은 전체 수출 증가분의 약 80%를 담당했다.

2024년 수출 성과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주요 수출 대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1~10월 기준, 우리 수출 증가율은 9.0%로 중국(3.7%), 미국(2.3%), 독일(△0.2%), 일본(△1.4%), 이탈리아(0.1%) 등을 크게 상회했다. 2023년 10월 이후 14개월 이상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그 덕분에 한국의 세계 수출 순위는 재작년 8위에서 지난해 6위를 탈환(1~10월 기준)했다. 이제껏 한국이 세계 수출 순위 6위를 차지했던 시기는 2015년, 2017년, 2018년, 2022년 등 단 네 번이다. 다만 최근 수출 저력을 보이고 있는 이탈리아와의 치열한 경합이 올해 연말까지 예상된다.

일본과의 수출 격차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약진을 보다 실감할 수 있다. 韓·日 수출 격차는 2010년 3,037억 달러에서 팬데믹 기간인 2020년 1,288억 달러로, 2023년에는 850억 달러로 급격히 줄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 불과 30억 달러 차이로 줄면서 수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일본마저 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들었다. 아쉽게도 상반기 이후 韓·日 수출 격차는 조금 더 벌어졌지만, 요지부동의 수출 대국인 일본과 대적할 수준까지 왔다는 사실은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충분히 입증할 만하다.

● 2024년 1~10월 주요국 수출증감률 ●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CEIC

● 韓·日 수출 격차 ●

(단위 : 억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CEIC

둘째, 수출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지난해 1~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33%를 기록했는데, 이중 재화와 서비스의 순수출 기여도가 2.29%p에 달한다.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을 수출이 담당했다는 뜻이다. 수출 성과가 내수 확대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는 3분기부터 차츰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 투자 등을 포함한 내수의 GDP 성장 기여도는 2분기 △0.2%p로 부진했으나 3분기 0.8%p로 큰 폭의 반등에 성공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2022년 2분기 이후 줄곧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오다가 지난해 2분기 플러스 전환했고 같은 기간 가구당 월평균 실질 가계수지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여전히 제조업 분야 고용은 줄어들고 소매 판매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연말 성과급을 통한 소비 여건 개선 등에 따라 수출 성과는 점진적으로 내수 확대에 이어질 전망이다.

셋째, 2대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선전이다. 지난 2003년 이후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을 놓친 적이 없고 미국은 늘 2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미국은 22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우리 1위 수출 대상국을 차지했다. 미국의 경기회복과 자동차 수출 호조 지속, 투자 확대에 따른 수출 유발 등이 對美 수출을 촉발한 반면,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수입 수요 개선 지연 등이 對中 수출을 제약했다. 수출 품목 다변화 측면에서도 對美 수출이 對中 수출보다 양호했다. 對美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가 함께 지탱했지만, 對中 수출은 반도체 집중으로 IT 경기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편중도를 나타내는 타일지수(Theil Index)도 對中 수출이 對美 수출보다 높았다. 다만, 하반기 들어 對中 수출이 점차 회복하며 중국은 다시 1위 수출 대상국을 유지하고 있다.

* 타일지수(2018.→2024. 上, 높을수록 편중) : (對美) 3.404→3.458 (對中) 3.690→3.507

넷째, 한국 무역은 지난 2년간의 뼈아픈 무역수지 적자를 탈피하고 안정적 흑자 기조를 되찾았다.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주요 흑자 품목들의 흑자 폭이 확대된 반면 최대 적자 품목 중 하나인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적자 폭은 축소됐다. 무역수지 흑자 회복에도 불구하고, 對中 무역수지 적자 고착화 현상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對중국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회복했으나 11월까지 중국과의 교역에서 우리는 6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기존에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이었으나 최근 중국의 첨단기술 향상, 국산 브랜드 선호, 자급률 확대 등은 적자 전환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

● 한국의 對美·對中 수출 비중 ●

(단위 : 전년 대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주요 품목 무역수지 현황 ●

(단위 : 억 달러)

		2023.1.~10. (A)	2024.1.~10. (B)	증가액 (B-A)
흑 자 확 대	반도체	262	562	+300
	자동차	448	476	+28
	선박	146	169	+23
	건전지·축전지	4	26	+22
적 자 축 소	천연가스	△298	△240	+58
	컴퓨터	△51	△5	+46
	석탄	△174	△140	+34
	반도체장비	△121	△99	+2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올해 세계 경제는 금리인하 기조와 주요국의 점진적 경기회복으로 3% 초반의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지정학적 갈등 지속, 중국 내수와 부동산 침체 지속 등은 하방 리스크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다. 더 나아가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9년까지 3.1% 수준으로 점차 하향 수렴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여기에 있다.

2000년대 이후 팬데믹 이전까지 세계 경제성장률이 평균 3.7%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을 포함한 앞으로의 전망치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IMF는 중장기적으로 세계 인구의 고령화와 투자 위축, 낮은 총요소생산성 등 구조적 요인이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한국에 좋은 소식일 리 없다. 새로운 산업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중심의 기술력과 제품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이유다.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어온 미국은 올해에도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시작한 금리인하 기조와 더불어 양호한 기업실적, 민간 소비 및 투자 확대, 건설경기 회복 등으로 최근 미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2% 중반까지 상향 조정하는 기관도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향후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했던 이민 제한과 對中관세·보편관세 부과를 실제 실행에 옮길 경우, 최근 겨우 진정세를 보이는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고 투자 및 소비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스테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까지 이를 수 있다는 다소 암울한 전망도 있다. 반면,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AI 투자 지속,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 감세 등 친기업 정책은 제조업 업황을

크게 개선할 여지도 있다. 관세인상 시기와 규모는 불확실성을 가중하겠지만, 이에 대비한 역내외 기업들의 재고 비축과 수출입 선수요 반영, 원활한 협상을 통한 미국산 수입 확대 등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교역이 늘 수도 있다. 어쨌든 미국은 대규모 내수와 높은 생산성으로 관세 충격을 점차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 통신사 블룸버그는 최근 트럼프 시대에 국가 신뢰도가 높고 기업가 정신이 우수한 미국 경제가 가장 유망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유로존은 지난해 파리 올림픽과 유로 2024 등 국제 이벤트 특수와 관광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완만한 속도로 경제 회복세를 지속해 왔다. 올해엔 건조한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둔화, 임금 상승에 따른 가계 구매력 향상, 그린전환·과학기술 투자 확대 등으로 1% 초반의 경제 성장이 기대된다. 제조업 개선 지연, 정치적 불확실성, 중국발 공급과잉과 중국과의 무역마찰, 미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 압력과 관세 인상 가능성 등은 하방 요인이다.

중국은 4% 중반 수준의 중속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지급준비율·대출우대금리(LPR)·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증권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불충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5% 내외의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엔 조금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과 내수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와 투자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나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 디플레이션 우려, 역대급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18%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은 내수 부문의 구조적 취약점이 될 것이다.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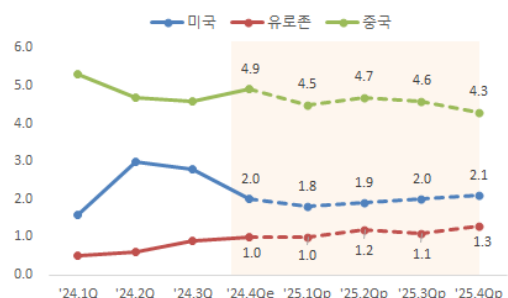
(단위 : 전년 대비 %)



자료 : IMF(2024. 10.)

●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전기 대비 연율 %, 전년 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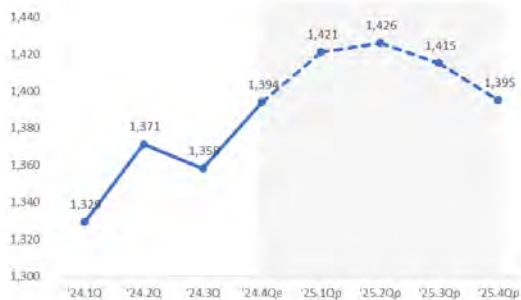
자료 : IMF, 블룸버그

최근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 극대화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훌쩍 넘었지만, 추가적인 충격이 있지 않은 한 올해 연말까지 점차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韓·美 양국 간 기준금리 차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점쳐지는 만큼 점진적으로, 중기적으로 달러화 약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반이민 정책들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소지가 있어 금리인하 및 환율 하락에 제약이 걸릴 가능성도 상존한다.

올해 국제유가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하락한 배럴당 70달러 초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은 전망했다. 기본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우세할 것이란 뜻이다. 수요 측면에선 국제 원유 수요의 약 17%를 차지하는 중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그다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 반면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점진적인 감산 완화와 미국 등 非OPEC 국가의 증산 기조로 초과 공급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환율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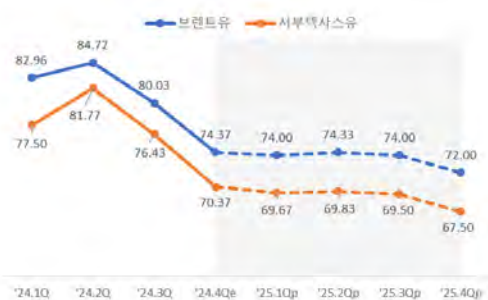
(단위 : 원/달러)



자료 : 블룸버그(2024. 12.)

● 국제유가 전망 ●

(단위 : 달러/배럴)



자료 : EIA(2024. 12.)

이와 같은 세계 무역환경 변화 속 우리 수출은 올해 1.8% 증가한 6,970억 달러, 수입은 2.5% 증가한 6,540억 달러, 무역수지는 430억 달러 흑자가 전망된다. 특히 수출의 경우 글로벌 IT 경기 확장에 따라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IT 전망 기관인 가트너는 올해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매출이 1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 스마트폰(6.4%),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11.3%), 가전(6.0%) 등도 매출 환경이 비교적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은 반도체(2.2%), 무선통신기기(9.6%), 컴퓨터(8.1%), 디스플레이(3.6%), 가전(1.1%) 등 주요 IT 품목이 견인할 전망이다. 선박(9.4%)도 지난 2022년 이후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인도가 이뤄지면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2021년부터 높은 성장률을 지속해 왔던 자동차·부품은 역기지 효과와 해외 생산 확대 등 영향으로,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은 올해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 공급과잉,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세 전환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은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예상되나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석탄, 천연가스 가격이 회복하면서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며 무역수지는 지난해 대비 줄겠지만 안정적인 흑자 기조는 충분히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 2024년 및 2025년 수출입 전망 ●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a	2025년 ^p
수 출	6,836	6,322	6,850	6,970
(증가율)	(6.1)	(△7.5)	(8.4)	(1.8)
수 입	7,314	6,426	6,380	6,540
(증가율)	(18.9)	(△12.1)	(△0.7)	(2.5)
수 지	△478	△104	470	430
무역규모	14,150	12,748	13,230	13,51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25년 품목별 수출 증가율 전망 ●

(단위 : %)

	5% 이상 증가	0% 이상 ~ 5% 미만 증가		0% 미만(감소)
품목명 (전년 대비)	무선통신기기(9.6) 선박(9.4) 컴퓨터(8.1)	일반기계(4.5) 철강(4.3) 디스플레이(3.6)	반도체(2.2) 가전(1.1) 섬유(0.3)	석유화학(△0.5) 자동차부품(△0.9) 자동차(△1.9) 석유제품(△7.9)

자료 : 한국무역협회

오는 1월 20일부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의 정책 변화는 우리 무역업계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언대로 관세장벽이 현실화되고 우방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는 자국 중심의 정책이 난무한다면 다소간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무역환경 속 기회 요소는 반드시 존재한다. 對中 고율 관세 부과 및 첨단 기술 제재 포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취하거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다. AI 등 새롭게 발달하는 산업 분야에서 기회를 발굴하고 기술 혁신과 제품 차별화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충분한 사전 조율과 협상을 통해 국내 산업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이 對美 해외직접투자(ODI)를 통해 미국 내 고용과 내수 확대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가 부각할 수 있는 중요한 논리다.

위기와 도전은 한국의 수출 성장 역사에 늘 함께 해왔고 오늘날 수출 강국이 된 자양분이기도 하다. 빗물이 땅을 보다 더 단단히 다지듯, 올해의 도전적인 대내외 무역환경 속에서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또다시 발로 뛰며 수출에서 해답을 찾을 것이다. 정부의 든든한 지원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조속한 국정 안정화로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기를 기대한다.

연속거래에서의 과세가격 및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

이 병 용 | Lee&Members 합동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에 권리사용료 등 법정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이번 호에서는 연속된 거래에서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 가산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¹⁾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辨濟)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며,²⁾

구매자와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관세법」 제31조 및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관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적용 순서는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³⁾

한편,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 관세법령은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과 관련되고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실제지급금액(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해 지급되는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참조

2) 「관세법」 제30조 제2항 참조

3) 「관세법」 제30조 제3항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참조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 혼합, 분류, 단순조립,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⁴⁾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며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제8조에서 규정한 가산요소를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제8조는 평가대상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해야 하는 평가대상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로 이러한 권리사용료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⁵⁾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 조에 대해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과세가격은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 제7조의 원칙 및 일반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

2. 연속거래에서의 과세가격 및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거래 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 A사와 한국 B사는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매계약의 대가로 한국 B사는 물품대금을 지급함. 또한 일본 A사와 한국 B사는 수입물품과 관련해 일본 A사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B사는 (매출액 - 매입액) × 1%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 금액을 일본 A사에 지급하기로 함.
- 한국 B사와 한국 C사는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C사는 합의된 바에 따른 물품대금을 한국 B사에 지급하며 물품대금은 한국 B사가 일본 A사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일본 A사에게 지급해야 할 권리사용료 추정액, 한국 B사의 영업이익 및 관련 비용 등을 감안해 책정한 총금액으로 한국 C사와 협의해 결정함(한국 C사는 총금액만 고려하고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
- 일본 A사는 수하인을 한국 C사로 해 선적서류를 전달함. 인보이스에 명시된 금액은 한국

4)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항 제3호 참조

5)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paragraph 1 및 제8조 paragraph 1(c) 참조

6)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 일반주해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 및 협정 제7조 및 제8조 참조

B사와 한국 C사 간에 체결된 금액으로 할 예정임(해당 거래는 예정이며, 실제 발생되지는 않음).

[질의 내용]

(질의 1) 한국 C사가 수입통관할 때 권리사용료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거래 상황과 달리 한국 B사가 일본 A사로부터 권리사용료 지급 대상인 물품을 수입해 보세구역에 반입한 채로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양도를 거쳐 한국 C사에 판매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질의 3) 질의 2 거래 상황과 달리 B/L 수하인을 한국 B사로 발행했으나 국내에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한국 C사로 B/L 양도과정을 통해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결과가 (질의 2)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귀사의 질의거래를 한국 B사와 한국 C사 간의 매매계약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체결됐는지 또는 도착한 후에 체결됐는지를 구분해 민원질의 건을 검토했음.

○ 먼저,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한국 B사와 한국 C사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면, 해당 거래가 우리나라로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거래에 해당하는 수출판매에 해당함. 따라서 이 경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한국 C사가 한국 B사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보세구역 양수도 등을 통해 한국 B사와 한국 C사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면, 한국 B사와 한국 C사 간의 거래는 국내거래에 해당해 한국 C사가 B사에 지급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음.

○ 이 경우 수출판매는 일본 A사와 한국 B사의 거래가 되며, 한국 C사가 일본 A사와 한국 B사의 거래가격을 알고, 그 거래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한국 B사가 일본 A사에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이 거래와 관련된 권리사용료 또한 가산해야 함.

○ 만약 한국 C사가 일본 A사와 한국 B사의 거래가격을 알 수 없고, 알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관세법」 제31조 이하를 적용해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함(해당 회신은 귀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기초해 검토한 것으로 최종 판단은 개별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음).⁷⁾

【해설】이번 사례는 특수관계자가 있는 해외 판매자 A와 국내에 있는 구매자 B와의 1차 거래 후 국내 구매자 B가 국내의 다른 구매자 C에게 이를 재판매하고 최종 구매자인 구매자 C가 해외 판매자 A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입신고했을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다.

여기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원칙과 수출판매의 개념 및 보세구역에서 양도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관세법령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법정 가산요소 금액을 더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과 관련되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실제지급금액(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해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 혼합, 분류, 단순조립, 재포장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⁸⁾

또한, 해당 물품의 사용, 처분에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⁹⁾

한편,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순차적으로 결정하며 제35조에서 정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⁰⁾

7) 관세평가분류원 질의회신 사례(2016년) 참조

8)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제4호 참조

9) 「관세법」 제30조 제3항 참조

10) 「관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참조

이 사례에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해당 거래가 수출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출판매에 해당한다면 어느 거래에서의 가격을 수입신고가격으로 결정할 지의 여부다.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며,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에 대해 협정 제8조에 따라 조정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관세법령도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권리사용료 등 법정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수출판매된 물품(‘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이어야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수출판매와 관련,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권고의견 14.1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표현의 의미(Meaning of the expression 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에서 “협정 제1조의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이란 표현은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가?”에 대해

“관세협력이사회의 국제관세용어사전에서 수입이라는 용어는 ‘어떤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평가를 위하여 물품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해당 수입물품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수입자가 판매가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한 목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1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involving an actual international transfer of goods)하는 거래만이 거래가격방법으로 물품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에 관한 일례로서 “X국의 판매자 S가 I국의 구매자 A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공해에 운송하는 도중 I국의 구매자 A가 물품을 인수할 수 없다고 해 I국에 있는 또 다른 구매자 B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 B가 물품을 I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판매자 S와 구매자 B 간의 판매는 결과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가 되며, 해당 거래는 물품의 국제 간 이동을 구성하므로 제1조에 따른 평가의 기초가 되며,¹¹⁾

예해 22.1 연속거래에서의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이라는 표현의 의미(MEANING OF THE EXPRESSION ‘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IN A SERIES OF SALES)에 대해 “연속거래(A SERIES OF SALES)는 둘 이상의 연속적인 물품판매에 대한 계약으로 구성되며 연속거래 상황에서의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처음거래 또는 이전거

11) 「WTO 관세평가협정」 ADVISORY OPINION 14.1 example4 참조

래(first sale or earlier sale) 대신에 수입국으로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거래(last sale)에서 지급한 가격"이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¹²⁾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수출판매의 범위에 대해 “판매는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말하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해당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³⁾

이러한 관점에서 이 질의회신에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한국 B사와 한국 C사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면 해당 거래가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거래로 수출판매에 해당하며, 이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한국 C사가 한국 B사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을 회신하고 있다.

반면에,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보세구역 양수도 등을 통해 한국 B사와 한국 C사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면 한국 B사와 한국 C사 간의 거래는 국내거래에 해당해 한국 C사가 한국 B사에 지급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수출판매는 일본 A사와 한국 B사의 거래가 되며, 과세가격은 한국 C사가 일본 A사와 한국 B사의 거래가격을 알고, 그 거래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한국 B사가 일본 A사에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권리사유료 또한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만약 한국 C사가 일본 A사와 한국 B사의 거래가격을 알 수 없고 알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이는 일본 A사, 한국 B사, 한국 C사 간의 거래는 수출판매에서의 연속거래로서 한국 B사와 한국 C사 간의 계약이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수출판매에 해당하므로 한국 C사가 한국 B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한국 B사와 한국 C사 간의 계약이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 이후 거래가 이뤄진

12) 「WTO 관세평가협정」 COMMENTARY 22.1 paragraph27 참조, 예해22.1은 권고의견 14.10에서의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표현이라는 의미는 연속거래 상황에 적용되는 의미를 명확히 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쟁점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예해2 2.1 서론 참조).

13)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수출판매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 참조

것이라면 이는 보세구역에서의 국내거래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을 달리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질의와 유사한 사례로, 관세평가분류원은 보세구역에서의 B/L 양수도 거래 시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민원질의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 후 재판매매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출국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거래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반입하게 한 거래의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을 알 수 없으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해 과세가격을 결정함을 회신한 바 있다.¹⁴⁾

이 경우의 거래상황은 해외 A사의 국내지사인 B사가 A사와 수출입계약 체결 후 물품을 수입해 보세구역에서 최종 소비자(End User)인 C에게 양수도계약을 통해 판매하고 B가 A에게 물품 대금을 송부하며, End User인 C는 B가 발행한 인보이스 금액(A가 발행한 인보이스 금액에 B의 마진을 추가한 금액)을 B에게 지급하며, End User인 C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질의로서 해당 질의에서의 거래상황과 이번 호 질의에서의 거래상황은 유사한 거래구조로 관세평가분류원은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거래된 물품에 관한 과세가격 결정에 대해 일관된 기초로 회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권리사용료(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해, 질의사항은 일본 A사와 한국 B사는 수입물품과 관련 일본 A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B사가 매출이익의 1%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일본 A사에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질의내용상 과세요건(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질의 문맥상 관련성 및 거래조건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표권 사용료는 해당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 경우에도 한국 B사와 한국 C사 간의 매매계약이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성립했다면, 수출판매는 일본 A사와 한국 B사 간의 거래가 되므로 권리사용료(상표권 사용료)는 한국 B사가 일본 A사에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지급하는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나

한국 B사와 한국 C사 간의 매매계약이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 성립된 경우 이는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 수입을 야기한 이전 거래인 일본 A사와 한국 B사 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 권리사용료(상표권 사용료)를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한국 C사가 일본 A사와 한국 B사의 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알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14) 관세평가분류원 질의회신(2013. 4. 19.) 참조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이 거래에서 주의할 점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과세가격의 기초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¹⁵⁾, 가산요소를 가산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는 자료가 없는 경우¹⁶⁾,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경우(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자료제출 요구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¹⁷⁾)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순차적으로 적용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의 거래가 수입국으로 수입되기 이전에 성립됐는지 아니면 수입 이후에 성립됐는지 여부에 따라 수출판매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연속된 거래(series sale)에서는 수입국으로 수입되는 마지막 거래(last sale)가 수출판매인 점을 고려해 과세가격을 판단해야 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주요 POINT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 등 법정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연속된 거래에서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입되는 마지막 거래(last sale)가 수출판매에 해당하므로 이때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과 관련되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해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 혼합, 분류, 단순조립,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5)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격 배제요건을 말함.

16)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 규정

17) 「관세법」 제30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참조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특수통관 / 진통제 특수통관

경구용 소염·해열진통제를 해외 직접 구매(직구) 시 통관 가능한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특송물품의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 일반 의약품은 총 6병(6병 초과인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통 관범위이며, 수입 요건확인 면제 대상입니다. 면세통관범위 초과 시 요건확인 대상으로 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의사 소견서 등에 의거해 타당한 범위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은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 CITES 규제물품(예 :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즉, 식약처 수입불허 성분 등이 포함된 경우 수입요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받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금지 성분 등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식약처(1577-1255)에서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 서울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보세공장도 서울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관세법」 제8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따라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보세공장도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세공장을 지정공장으로 운영할 경우

보세공장에 적용되는 규정도 동시에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 관리대상화물

관리대상화물 검사대상으로 지정됐더라도 추후에 해제될 수 있을까요?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검사대상화물의 해제)

①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3조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사대상화물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원자재(수출, 내수용 포함) 및 시설재인 경우
2.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하는 물품인 경우
3. 학술연구용 실험기자재이거나 실험용품인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해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제신청의 사유 등이 타당하고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 또는 감시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 <중략> ...

④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검사한 결과 적재화물목록 정정, 보수작업 대상 등 해당 조치사항이 완료된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통관 / 일본産 고철 수입

일본産 고철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일본産 고철 수입통관 시 수출국에서 발행한 무방사능확인서를 징구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RF 제너레이터에 관한 품목분류 판례해설

이 하 철 | 관세청 법무담당관

1. 들어가며

관세의 과세요건 확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품목분류 작업이다.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어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세율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품목분류와 관련해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협약') 및 그 부속서인 품목분류표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분류표를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정해진 별표 관세율표로 수용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HS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자료로서 'HS 해설서'와 'HS 품목분류 의견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지침서를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수용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제84류에 속하는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인 식각장비의 부분품에 해당하더라도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한다고 봐 관세율표 제8543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판결¹⁾을 소개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물품 수입에 따른 수입신고

원고는 무역업, 무역대리업, 기계 및 설비의 수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5. 1.부터 2019. 7.까지 미국에 있는 A사로부터 RF Generator와 Matcher(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에 따라 HSK 제8543.70-9090호[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기본관세율 8%]로 품목분류하고 수입신고했고 피고는 이를 수리했다.

1)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누37604 판결(상고장 각하명령으로 확정됨)

나.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반도체 식각장비의 부분품이고 이 사건 물품이 반도체 식각장비에 주로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어 이 사건 물품을 HSK 제8543호가 아닌 제8486호[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WTO 협정세율 0%로 품목분류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9. 9.부터 2020. 2.까지 5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품목분류 오류

가) 舊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관세율표에 따르면,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은 품목번호 제8486호로,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는 제8486.20호로,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86.90호로 각각 분류된다. 그리고 품목번호 제8486호로 분류되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에 대해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및 제16부 총설 (Ⅱ)부분품(부의 주 제2호)은 특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와 동일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라목은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제8486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 해설서에서도 제8486호는 “동일 호에 분류되는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중 식각장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HSK 제8486호의 소호 90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RF Generator는 진공장치에 고주파 전력을 공급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발전기이고, Macher는 RF Generator에서 동축케이블을 통해 공급받은 고주파 전력을 반도체 장비의 챔버(Chamber)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양측의 임피던스가 일치하도록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 정합장치로, 모두 반도체 식각장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다. 또한 고도의 정밀함과 미세함을 요구하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특성상 반드시 해당 공정에 적합하게

설계된 출력전력·주파수의 RF Generator와 Matcher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사건 물품은 모두 반도체 식각 공정 분야의 대표적인 제품인 키요(Kiyo) 및 플렉서(Flex) Process Module에 결합되는 부품으로서, 원고가 수입한 RF Generator가 공급한 고주파 전력을 챔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오직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도록 제조됐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HSK 제8486호의 용어 정의 및 제84류의 주 규정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486호로 최우선 분류돼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춘 전기기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이 HSK 제8543호로 분류돼야 한다고 봤으나, ① 이 사건 물품은 식각장비와 결합한 경우에 한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식각장비 또한 이 사건 물품과 결합된 경우에 한해 플라즈마를 이용한 식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과 식각장비의 기능이 서로 독립해 작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물품이 없으면 식각장비의 기능이 수행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의 기능이 식각장비의 조작상 필요 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물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다) 해외 관세당국도 이 사건 물품을 HSK 제8486호로 분류하고 있고, 미국 국제무역 법원도 2009년 RF Generator가 반도체 플라즈마 식각·증착 공정에 전용되는 기기라고 판결했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관세청은 2003년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건식 식각장비의 일부인 RF Generator를 건식 식각장비의 부분품으로 봐 제8466.93호로 분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RF Generator가 건식 식각장비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현재까지 품목분류 변경 고시를 통해 RF Generator의 품목분류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표명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을 HSK 제8543호로 분류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피고

1) 품목분류 관련

가) 이 사건 물품은 반도체 식각장비 외에도 다양한 산업, 연구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이 반도체 식각장비에 전용되거나 반도체 식각장비에 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세율표는 HSK 제8543호에 관해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8543호에 관한 HS 해설서에 따르면 ① 다른 기기와 독립하여 작용할 수 있는 기기이거나, ② 다른 기기에 부착 내지 결합을

통해서만 기능이 수행되더라도 부착 내지 결합되는 기기와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기의 경우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은 플라즈마 발생장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로서 HS 해설서에서 제85류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물품은 직접적으로 식각을 수행하는 기기가 아니라 식각을 위해 필요한 플라즈마 발생장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도체 제조 장비인 식각장비와는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 사건 물품은 HSK 제8543호로 분류돼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물품이 제8543호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기계에 반드시 필요하고 반도체 제조장비에 전용되도록 설계됐더라도,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543호로 분류돼야 한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K 제8543호로 분류했고, 독일 관세당국도 플라즈마 공정에 필수적인 고주파 전원 공급기와 RF Matching Networks를 HS 제8543.70호로 분류했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관련

관세청은 2003년 RF Generator를 각각의 기능에 따라 해당 호 또는 건식 식각장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제8486.93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했을 뿐 RF Generator를 제8486.93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1) 관계 규정의 체계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HS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HS협약은 전문 및 20개 조항과 부속서{① 품목분류표[4단위로 분류되는 호(Heading)와 추가 2단위로 분류되는 소호(Sub-Heading)로 구성], ② 부·류·소호의 주(Notes), ③ HS협약 해석에 관한 통칙}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관세법」 제50조의 [별표] 관세율표로 수용해 적용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율표상 품목분류(6단위)를 10단위까지 세분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를 고시해 운영한다.

HS협약에 따른 HS협약 관련 지침 자료로서 ‘HS 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HS)’와 ‘HS 분류의견서(HS Classification Opinion)’가 있는데, ‘HS 해설서’는 WCO의 HS품목분류표와 관련된 공식적인 해설서 및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로서 부, 류, 호 및 소호의 범위와 주 및 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하고, ‘HS 분류의견서’는 ‘HS 해설서’와 마찬가지로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 및 WCO의 개별 품목에 대한 공식적인 품목분류 의견서로서 품목분류 코드와 분류 이유 등이 적시된 자료다. 우리나라는 ‘HS 해설서’ 및 ‘HS 분류의견서’를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수용하고 있고, 이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참조).

관세율표와 함께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HS협약, HS 해설서, HS 분류의견서를 「관세법」 및 관련 고시 등의 국내법령으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관세율 결정에 있어서도 관세율표뿐만 아니라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가 적용된다.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세율표 HSK 제8486호, HSK 제8543호 관련 규정

관세율표는 HSK 제8486호에 관해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하위분류인 HSK 제8486.90호에 관해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는 HSK 제8543호에 관해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하위분류인 HSK 제8543.70호에 관해 ‘그 밖의 기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는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류 주 제9호 라목에서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HS 해설서의 HSK 제8486호, 제8543호 관련 규정

舊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1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16-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HS 해설서, 舊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19. 9. 23. 관세청고시 제201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HS 해설서는 제16부 총설 (Ⅱ)부분품(부의 주 제2호)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 <중략> …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각 HS 해설서는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8486호로 분류하면서 식각장비(건식 플라즈마 식각장비)를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로 분류하고 있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에 따라 제8486호에 제8486호로 분류하는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과 그 부속품이 포함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각 HS 해설서는 제85류 총설에서 “제85류에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제8543호)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43호에 관해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제8479호 해설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 <중략> …

-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잡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춘 기계
- (i)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잡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 (ii)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나 복잡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

나.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 판단

1) 인정 사실

가) RF Generator는 RF(Radio Frequency, 무선주파수)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이고, Matcher는 RF 전달 계통에서 임피던스(Impedance Matching)를 수행하는 장치다.

나) 반도체 제조공정은 크게 ① 웨이퍼(wafer) 제조, ② 산화 공정(웨이퍼에 산소를 주입해 산화를 유도하는 과정), ③ 포토 공정(설계도면을 웨이퍼에 구현), ④ 식각 공정(웨이퍼상의 특정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화학약품을 이용하는 습식 식각과 가스 화학 약품을 이용하는 건식 식각이 있다), ⑤ 증착 공정[웨이퍼에 특정 물질을 쌓아올리는 과정으로 화학기상 증착법(CVD)·원자층 증착법(ALD) 등이 있다], ⑥ 금속 배선 공정(웨이퍼에 금속 배선을 연결하는 과정), ⑦ EDS 공정(성능 평가 과정), ⑧ 패키징으로 구분된다. 그중 건식 식각(Dry Etching) 공정은 진공 챔버에 가스를 주입한 후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만들어낸 플라즈마 상태를 이용해 웨이퍼에서 감광액으로 보호되지 않은 막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다) 식각장비는 크게 Transfer Module, Process Module(식각 공정이 진행되는 모듈로 RF Generator, Matcher, Process chamber 등으로 구성), Gas Box(Process Module로 가스를 공급하는 장치)로 구성돼 있는데, 이 사건 물품은 식각 공정에 사용될 경우 Process Module에 부착돼 사용된다.

라) 피고는 2007년 관세율표 개정 당시 제8486호가 신설된 이후에도,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다.

결정세번	품명	물품 설명
HSK 제8543.89-9090호 (품목분류과-107047, RF Generator 2006. 4. 28.)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막생성기나 식각장치 등에 13.56MHz 무선주파수를 발생시켜 공급하는 장치
HSK 제8543.70-9090호 (품목분류 3과-1553, RF Generator 2015. 6. 10.)		반도체 제조공정 중 화학기상증착(CVD) 장치에서 사용되는 플라즈마를 발생하기 위한 에너지인 고주파 전원 장치로 전압을 인가하면 OSC(발진기)에서 27.12MHz의 고주파가 발생하고 Driver와 PA(Power AMP)를 거치면

결정세번	품명	물품 설명
		서 원하는 전력의 크기로 증폭되고 이 전력은 Sensor를 거쳐 출력됨
HSK 제8543.70-9090호 (품 목 분 류 2 과 - 4 5 3 6 , AUTO Matching Unit 2015. 6. 22.)		고주파 전원장치(RF Generator)에서 동축 선로를 통해 공급받은 고주파 전력을 반도체 장치의 챔버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양측의 임피던스가 같아지도록 하는 자동 정합장치

마) 한편, 2023. 3.경, 2023. 9.경, 2024. 3.경 각 개최된 WCO의 제71차 내지 73차 통일체계위원회는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RF Generator 및 RF Matching Networks를 제8543.70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2) 판단

처분의 경위와 인정 사실 및 관계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물품은 제8543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의 규정을 종합하면,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 기계류, 설비, 장비, 장치, 기기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일 경우 해당 호로 분류하고(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을 가진 전기기기(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는 제8543호로 분류되며, ①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해 작동될 수 있는 기계 및 ②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잡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해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i)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잡한 기계에 의해 행해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ii) 다른 기계·기기나 복잡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기능을 가진 기계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물품은 제84류에 속하는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인 식각장비(건식 플라즈마 식각)의 부분품에 해당한다. 그런데 RF Generator는 RF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이고, Matcher는 RF 전달 계통에서 임피던스 정합을 통해 최대 전력 전달효율을 달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해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물품은 다른 기계나 기기와는 별개로 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에 해당하고,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되거나 보다 복합적인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해 RF 전력 생산 및 임피던스 정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물품이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식각 공정에 사용될 경우 건식 식각장비 중 Process Module에 부착된 경우에 한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이 사건 물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제8543호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HSK 제8543호로 분류돼야 한다.

나) WCO의 제71차 내지 제73차 통일체계위원회도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RF Generator 및 RF Matching Networks를 제8543.70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다) 나아가 다음 사정에 비춰 이 사건 물품을 제8486호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1)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따르면,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 기계류, 설비, 장비, 장치, 기기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일 경우 해당 호로 분류하고(가목),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다른 호로 분류한다(나목). 그리고 HS 해설서 제16부 (II)부분품(부의 주 제2호)도 특정 기계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물품 자체가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가)항에서 본 대로 이 사건 물품은 제85류의 특정한 호(제8543호)에 포함돼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543호로 분류됐으므로, 나목에 따라 다른 호로 분류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

(2) 원고는 일반적으로 기타 산업 또는 연구 등에 사용되는 RF Generator는 300W, 600W 및 최대 1KW의 출력을 가지는 반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이 사건 물품의 출력은 최소 1KW 이상의 높은 출력이 요구되므로 고출력 사양으로 특별히 제작된 RF Generator 및 해당 출력에 대한 정합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RF Matcher는 오직 반도체 식각장비에 전용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두5376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만 납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이 다른 사업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반도체 식각장비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됐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물품 제조자의 포트폴리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의 적용 범위를 스퍼터링(SPUTTERING), 에칭/세정(ETCH/CLEAN), 화학기상증착기(CVD), 증착(ALD), 기타

(other) 등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물품이 반도체 식각장비 외에도 다양한 산업, 연구 등에 널리 사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라목이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물품이 반도체 보울이나 웨이퍼,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라목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된다고 볼 수도 없다.
- (4) 이 사건 물품은 식각기에 사용하기 위한 RF 발생기와 임피던스 정합장치로서 HSK 제8486호에서 규정하는 ‘식각기’ 그 자체가 아니라, 식각에 필요한 가스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기 위해 플라즈마 발생장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도체 제조 장비인 식각장비와는 별개로 독립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기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5) 관세청은 2007년 관세율표 제8486호가 신설된 이후에도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로 봐 HSK 제8543호로 분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해 어떤 행위를 했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74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관세청이 미완성 건식 식각기(중요 요소 중 일부가 제외돼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에 해당했다. 수입 제시된 부분은 Process Chamber, Gas Panel 중 Gas 공급라인, Gas 공급조절장치, System

Controller 중 Process Chamber 제어용 Interface Board 등 일부, RF Generator이다)에 대해 “舊 관세법(2023. 12. 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따라 각각 기능에 따라 해당 호 또는 건식에칭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제8466.93-1000호에 분류한다”고 품목분류결정해 2003. 4. 9.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관세청은 당시 시행 중이던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일 경우 해당 호에(가목),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66호 등에 분류(나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관계로 부분품인 미완성 건식 식각기를 각각의 기능에 따라 해당 호(가목) 또는 건식에칭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제8466.93-1000(나목)에 분류한다고 결정한 것일 뿐, RF Generator를 HSK 제8466호로 분류한다고 명시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관세청이 앞서 본 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관세청이 RF Generator가 건식 식각장비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거나 RF Generator를 HSK 제8466호로 분류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5. 결어

대상 판결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기계 등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의 경우 해당 호로 분류한다는 원칙(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입각해서 다른 기계 등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호로 분류돼야 함을 명확히 보여줬으며, 이러한 판단은 WCO의 통일체계위원회 결정과도 부합한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는 기존 대법원 판결 취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와 같이 대상 판결은 품목분류의 주요 쟁점들에 관한 판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관세율표 제8541호의 범위 -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품을 중심으로 -

김 성 채 | PWC 관세법인

이번 호에서는 2022년 HS 개정, 특히 제85류 주 제12호의 개정과 관련해 ‘다수의 반도체 디바이스 및 능수동 소자의 조립품’을 중심으로 제8541호의 범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머리말

2002년 HS에서는 제8541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우선 ‘반도체 트랜스듀서’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이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을 제8541호에 분류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반도체 디바이스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 2022년 HS 개정(제85류 주 제12호) ●

HS 2017	HS 2022
제85류 주 9.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제85류 주 12.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 1)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말한다. 반도체 디바이스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능동·수동부품을 장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수 부품의 조립품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정의에서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는 ...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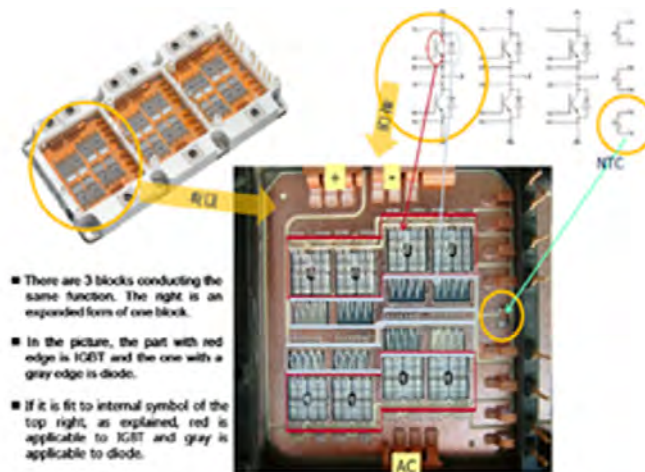
개정된 HS에서 제85류 주 제12호는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에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능·수동 부품을 장착한 조립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둘 이상의 반도체 디바이스가 결합된 것뿐 아니라 여기에 하나 이상의 수동소자가 결합된 조립품도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둘 이상의 트랜지스터(반도체 디바이스)에 수동소자인 저항이나 커패시터 등이 장착된 조립품도 제8541호에 분류할 수 있도록 호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의견서(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상으로는 6개의 트랜지스터와 6개의 다이오드 그리고 3개의 저항만으로 이뤄진 조립품이 (HS

제85류 주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8504.40호에 남아있다.

다음 사진의 물품은 능동소자인 제8541호에 해당하는 트랜지스터와 보조적 기능을 하는 수동 소자로 제8533호에 해당하는 저항이 결합된 조립품으로 일전 제85류 주 제12호 가목 1)의 신설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개정된 2022년 HS 하에서는 제8541호에 포함된다 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WCO HS위원회는 2022년 HS 개정에 따른 기존의 분류의견서 개정 검토 시 이 물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 WCO HS위원회 결정 사례(트랜지스터 6개, 다이오드 6개, 저항 3개로 구성된 IGBT 모듈)-제8504.40호(위) & WCO 품목분류 의견서 등재 사례(제8504.40호)아래) ●



2. **Packaged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IGBT) module**, consisting of 6 switches in which an IGBT and a Free Wheeling Diode (FWD) are connected in parallel, and 3 NTC (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Thermistors. The module is used in hybrid, electric or fuel cell vehicles to convert DC power to AC power.

Application of GIRs 1 (Note 2 (a) to Section XVI) and 6.

Adoption : 2018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2022년 HS 규정에 따라 이 물품이 제8541호에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2022년 HS 개정에 따른 제8541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i) 우선 2022년 개정 전의 HS를 기준으로 제8541호에 분류 가능한 물품에 대한 국제적인 논쟁과 분류 흐름의 관점에서 제8541호에 포함되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ii) 2022년 HS 개정 시 제8541호에 대한 개정 논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iii) 이를 통해 2022년 HS에서 규정한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개념과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제8541호의 범위(2022년 HS 개정 이전)

1) 모듈 상태 반도체 디바이스의 품목분류

HS 품목분류표 제8541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종류로 이해되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LED) 등이 분류돼 왔으며, 이 호의 범위는 1988년 HS협약 발효 이후 2022년 HS 개정 전까지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2022년 HS 이전의 제8541호 호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85.41 -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Diodes, transistors and similar semiconductor devices;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s, including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 modules or made up into panels; light-emitting diodes (LED); mounted piezo-electric crystals)

호의 용어에 따르면 제8541호에는 네 가지 그룹의 물품이 분류된다. 첫째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이며, 둘째 그룹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셋째는 발광다이오드가 분류되고 마지막 그룹에는 장착된 압전소자가 포함된다. 이 글에서는 네 번째 그룹의 장착된 압전소자는 논의하지 않는다.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는 개별 칩 상태로 절단한 것인지, 절단하기 전의 웨이퍼 상태인지, 절단 이후 개별 칩에 단자나 도선을 연결해 밀봉시킨 패키지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제8541호에 포함된다.

두 개 이상의 반도체 디바이스가 하나의 패키지나 기판 위에 결합돼 제시되는 형태의 물품, 즉 모듈이나 패널 상태의 물품도 제8541호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인 품목분류 쟁점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제8542호에 분류되는 모노리딕 집적회로를 두 개 이상 결합 또는 조립한 물품¹⁾이 제8542호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1) 이러한 물품은 복합구조칩 집적회로(Multi-chip Integrated Circuits)로 불리며 2007년 HS 개정 시에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또한 모노리딕 집적회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와 함께 제8542호에 포함되도록 호의 범위가 확대된 바 있다.

제8541호의 용어를 보면 두 번째 그룹인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중 광전지(photovoltaic cell) 부분에서만 특별히 모듈이나 패널 상태의 것을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반도체 모듈, 예를 들면 ① 2개 이상의 트랜지스터 또는 2개 이상의 발광 다이오드로 구성될 물품, ②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가 결합된 물품, ③ 발광다이오드와 다이오드가 결합된 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견해가 갈리게 된다.

우선 호의 용어를 가장 엄격하게 해석해 제8541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또는 광전지)의 경우에만 한정해 모듈화된 물품을 포함할 뿐 광전지 이외의 반도체 디바이스가 모듈화된 경우 제8541호에 포함될 수 없다는 뜻으로 본다면 앞에서 언급한 ①, ②, ③의 물품은 제8541호에 분류할 수 없다. 이 견해는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는 (광전지를 제외하고는) 단일한 개별부품 형태로 한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보다는 덜 엄격하게 해석해 광전지의 경우처럼 제8541호 내에서 같은 그룹의 물품끼리 결합한 것만 제8541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앞의 ①과 ②는 제8541호에 포함되는 반면, ③은 제외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호의 용어를 가장 관대하게 해석해 최소한 제8541호에 포함되는 물품끼리 결합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제8541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앞서 언급한 ①, ②, ③의 물품 모두를 제8541호에 분류할 수 있다.

실제로 WCO의 HS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품목분류 견해가 갈린 바 있다.

2) 절연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IGBT) 모듈의 품목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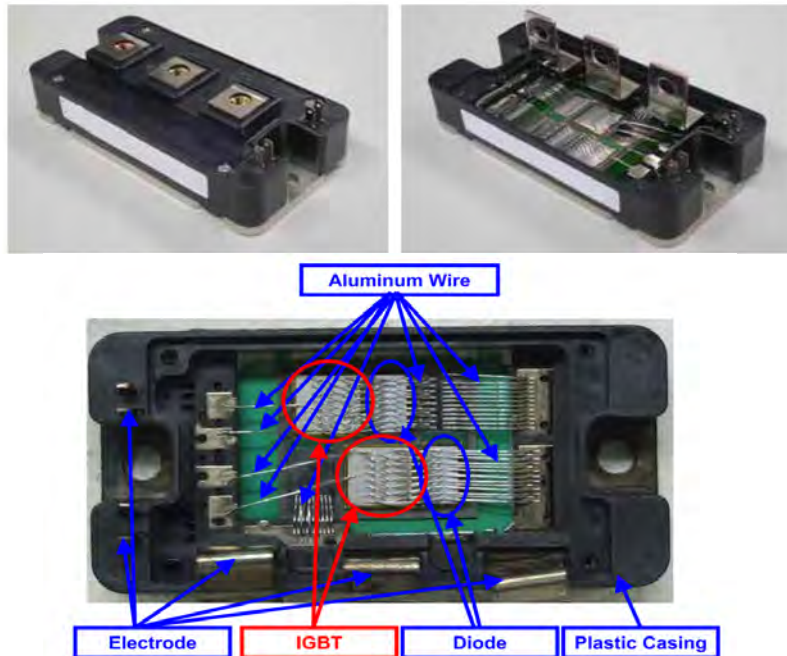
(1) IGBT 2개와 다이오드 2개로 구성된 모듈(제48 ~ 50차 HS위원회)

2011년 9월, 제48차 WCO HS위원회는 일본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물품의 품목분류를 검토했다.

● HS위원회 결정 사례(IGBT 모듈 ①) ●

구분	내용
구성 및 형태	IGBT 2개, 다이오드 2개로 구성된 폭 48mm, 길이 94mm, 높이 29mm 크기의 패키지로 다수의 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 다이오드는 역전류 발생 시 트랜지스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역평행으로 트랜지스터와 연결됨. 각 디바이스는 알루미늄 와이어로 연결되어 플라스틱 케이싱 내에 결합되며 실리콘 젤을 충전하여 절연처리됨.
기능	전류의 증폭, 발진, 주파수 변환 및 스위칭 기능 수행. 전압 1,200V, 전류 150A의 고전압 요건에서 전류와 전압을 조절 및 출력
용도	엘리베이터, 전동열차, 전기차,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로봇 및 태양광/풍력 발전기 등에 사용

● HS위원회 결정 사례(IGBT 모듈 ①) ●



출처 : WCO Working Document NC1693

EU, 중국 등은 제8541호 호의 용어를 가장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의 조합을 이 호에 포함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에 따라 이 물품을 제8541호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물품의 기능은 제8541호에 분류되는 트랜지스터의 기능과는 다르며 이러한 물품을 제8541호에 분류한다면 호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지적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이 물품이 제8541호의 같은 그룹에 속하는 물품만의 조합으로 이뤄져 있으며, 패키지 내에 포함된 다이오드는 IGBT의 기능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8541호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우선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8541호 분류를 지지했다.

제48차 HS위원회는 투표 결과 ‘24 : 18’로 이 물품이 제8541호에 분류 가능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EU는 HS 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 결정에 대한 유보를 요청했고, EU의 유보 요청에 따라 이 안건은 2012년 9월, 제50차 HS위원회에서 재논의됐다. 그러나 제50차 HS위원회 또한 투표를 통해 이 물품이 제8541호에 분류됨을 재확인했다.

이후 2017년 3월, 제59차 HS위원회는 이 물품과 구성요소는 동일하나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의 개수만 각 1개씩인 IGBT 모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8541호로 결정한 바 있다.

(2) IGBT 6개, 다이오드 6개와 저항 3개로 구성된 모듈(제58 ~ 60차 HS위원회)

2016년 9월, 제58차 WCO HS위원회는 한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물품(이 글의 머리말에서 설명한 물품)의 품목분류를 검토했다.

● HS위원회 결정 사례(IGBT 모듈 ②) ●

구분	내용
구성 및 형태	스위치 6개(각각의 스위치는 IGBT 1개와 역평행으로 연결된 다이오드(Free wheel diode) 1개로 구성)와 NTC(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서미스터(thermistor) 3개가 결합된 패키지
기능 및 용도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연료전지차의 인버터에 사용되어 DC전력을 AC전력으로 변환

구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물품은 저항(NTC 서미스터)이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면 앞의 (1)에서 언급한 IGBT 모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1)의 IGBT 모듈은 스위칭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데 반해 이 물품은 전력변환 기능을 수행한다는 차이가 있으나 다수의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를 조합해 전력변환(정류 등) 회로를 만드는 것은 반도체 디바이스의 일반적인 기능 중 하나일 뿐이다. 또한 HS 품목분류표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8541호는 그 기능에 관계 없이 다른 호에 우선분류할 수 있으므로 전체 모듈의 기능은 제8541호 분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8541호에 포함되지 않는 개별 부품(저항)의 존재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NTC 서미스터는 쟁점물품 작동 시 온도를 센싱하는 기능만 할 뿐 전체 디바이스의 동작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²⁾

정리하자면 “제8541호에 포함되는 다수의 개별 부품(트랜지스터, 다이오드)이 결합된 모듈을 제8541호에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수동부품(저항)이 추가됐다는 사실만으로 제8541호에서 제외돼야 하는가?”라는 것이 이 물품 품목분류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적 관점에서 보자면 미세한 차이일 수 있으나 HS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참가국 대표는 다른 호에 포함되는 개별 부품(저항)의 존재로 인해 쟁점물품을 제8541호에 제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기능적 관점에서는 투표 결과 이 물품을 제8536호의 스위치보다는 제8504호의 정지형 변환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6단위 소호 레벨의 품목분류에 관해 제8504호 내에서 이 물품이 정지형 변환기(인버터)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사용된다는 점에 따라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소호 제8504.90호)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이 입력되는 직류전압을 교류전압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

2) 출처 : WCO Working Document NC 2373

므로 그 자체로 정지형 변환기(인버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소호 제8405.40호에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한 차례 재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호 제8504.40호에 분류했다.

3) 발광다이오드(LED) 모듈의 품목분류(제50 ~ 54차 HS위원회)

WCO HS위원회는 한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 HS위원회 결정 사례(발광다이오드 모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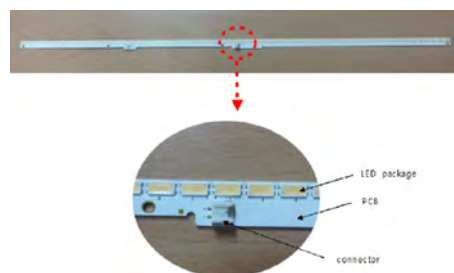
구분	내용
구성 및 형태	길이 440mm, 폭 5mm 크기의 PCB 위에 62개의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가 실장되어 있고 PCB 하단에는 커넥터가 형성된 물품. 각각의 LED 패키지 안에는 LED 칩 1개와 다이오드 1개가 결합되어 있으며 패키지 표면은 형광 재료로 코팅되어 있음. PCB에는 외부 AC 전력을 LED 칩에 적합한 전압으로 바꾸어주는 제어회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기능 및 용도	LCD TV용 백라이트나 튜브 모양의 LED 램프, 옥외 조명기기 등에 장착되어 광원으로 사용됨.

최초 이 안건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2012년 9월, 제50차 HS위원회)에는 LED를 광원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종래의 방전램프나 필라멘트 램프 등을 대신해 조명, 기기용의 광원 등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때였으며, HS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 품목분류와 관련해서는 제48차 HS위원회에서 앞서 언급한 IGBT 모듈의 품목분류를 최초로 결정한 직후였다.

제48차 HS위원회에서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만으로 구성된 디바이스를 제8541호에 분류함에 따라 적어도 제8541호의 같은 그룹 내에 포함된 물품만의 조합이라면 제8541호에 분류된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 성립됐다고 할 수 있다.

쟁점물품은 제8541호의 세 번째 그룹 물품인 발광다이오드(LED)와 첫 번째 그룹 물품인 다이오드가 다수 결합된 것으로 이러한 물품이 제8541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 기준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 HS위원회 결정 사례(발광다이오드 모듈) ●



출처 : WCO Working Document NC196793

제50차 HS위원회에서 일본을 포함한 몇몇 국가는 LED와 다이오드의 조합 또한 제8541호에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인 반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은 (제8541호의 같은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 간의 조합은 제8541호에 남더라도) 제8541호의 다른 그룹에 속하는 물품의 조합은 제8541호에 남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제50차 HS위원회는 투표 결과 이 물품은 제8541호에서 배제된다고 보고 제9405호에 분류하도록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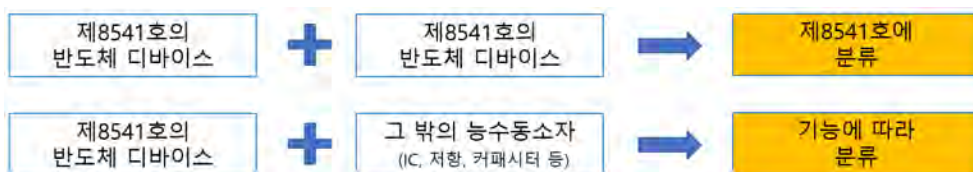
그러나 이 안건은 일본의 유보 요청에 따라 재논의됐고, 제53차 회기에서 투표 결과 기존의 결정이 변경돼 제8541호로 결정됐다. 이후 다시 미국의 유보 요청에 따라 재논의됐으나 제54차 회기에서 다시 한 번 투표한 결과 직전의 결정대로 제8541호로 결정됐다. 제54차 회기에서 한국은 기존의 입장을 변경해 제8541호 분류를 지지한 바 있다.

4) 소결

앞서 말한 것처럼 제8541호의 문구 해석에 관한 국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제8541호에 포함되는 개별 부품이 둘 이상 장착된 모듈 형태 반도체 디바이스의 품목분류에 대해 국제적인 불일치가 발생해 왔다. WCO HS위원회에서는 2011년 제48차 회기부터 2014년 제54차 회기에 걸쳐 한국, 미국, EU, 일본 등의 안건 제기를 통해 쟁점이 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논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왔다.

우선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모듈형 반도체 디바이스의 품목분류에 있어 각 구성요소가 동일한 종류의 것이든 다른 종류의 것이든 제8541호에 해당하는 개별 능동소자가 둘 이상 결합됐다는 이유만으로 제8541호에서 배제된 근거는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와 보호용 다이오드가 결합된 물품은 제8541호의 트랜지스터로 분류하며, LED 모듈에 보호용 다이오드가 결합된 경우에도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LED)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반면 제8541호에 포함되는 반도체 디바이스 이외의 다른 능수동소자가 결합된 경우 예를 들어 집적회로(IC), 저항, 커패시터 등이 장착된 경우에는 제8541호에 포함될 수 없으며 보통 그 기능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해야 한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³⁾.

●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품의 분류 ●



3)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품의 분류' 표에서 제시한 기준은 그간 HS위원회에서 논의된 결정된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품의 품목분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며, 제8542호의 복합부품 집적회로(Multi-component IC)에 해당하는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WCO HS위원회의 분류사례는 직접적으로 HS 품목분류표의 Legal Text에 반영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8541호에 포함되는 개별 부품만으로 구성됐다 하더라도 품목 분류 관점상 논쟁이 될 만한 물품은 존재할 수 있다. 트랜지스터나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에 단순한 보호용 다이오드가 아니라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다이오드가 결합된 경우에도 제8541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LED 모듈에 단순한 보호용 다이오드가 아니라 다이오드로만 이뤄진 정류회로가 부가된 경우에도 여전히 발광다이오드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HS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WCO HS위원회는 램프나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 제품을 중심으로 제8541호에 분류되는 물품과 기타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구분하기 위한 HS 개정안을 검토하게 된다.

3. 제8541호와 관련한 HS 개정 경과

1) 2017년 HS 개정

(1) LED 램프의 품목분류(제49 ~ 52차 HS위원회)

2022년 HS에서 제8541호의 개정은 2017년 HS의 LED 램프 관련 개정부터 비롯된다. 2012년 3월, WCO 제49차 HS위원회는 EU의 요청에 따라 LED 램프와 관련한 제8539호의 용어 개정 제안 및 LED 램프의 품목분류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전기의 효과를 이용해 빛을 발생시키는 기능은 HS 품목분류표 제85류, 제90류 등에 포함된다. 자동차에 장착되는 조명용·신호용 기기는 제8512호에, 휴대형의 전등은 제8513호에, 교통관제를 위한 신호용 기기는 제8530호에,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 시각신호용 기기는 제8531호에, 사진용의 섬광전구는 제9006호에, 진단·탐침·방사선 요법을 위해 설계 제작된 것은 제9018호에 분류되며, 실내외 조명용 기구나 서치라이트는 제9405호에 분류된다. 그리고 각종 전기식 램프는 제8539호에 분류되며, 2012년 HS 기준으로 제8539호 호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85.39 -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제8539호에 분류되는 램프는 보통 앞서 예시한 기기에 광원소스로 사용되며, 이러한 램프는 대체로 램프홀더나 전원소스에 곧바로 삽입할 수 있도록 bi-pin 또는 에디슨 스크루 타입의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제8539호 호의 용어에는 필라멘트램프, 방전램프, 아크램프

프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EU는 LED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음과 같이 LED 램프가 종래의 필라멘트 램프나 방전램프를 대체하고 있으나 제8539호 호의 용어의 한계로 이러한 물품을 제8539호에 분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HS 제8539호의 용어 개정을 제안했다.

● 여러 가지 형태의 LED 램프 ●



출처 : WCO Working Document NC1749

HS위원회는 HS 개정 논의 이전에 당시 기준으로 이러한 LED 램프가 품목분류표의 어느 호에 분류되는지에 대해 먼저 검토했다. 논의 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다.

● HS 위원회 결정 사례(발광다이오드 램프) ●

품명	물품 설명	
① LED spot lamp	bi-pin 커넥터가 장착된 천정 매입형 램프로 다수의 LED 칩과 교류 전원을 LED가 구동되는 전원으로 전압으로 변환해주는 회로 및 heat sink가 형성된 물품.	
② LED bulb	에디슨 스크류형 커넥터가 장착된 표준 '백열전구' 타입의 램프로 다수의 LED 칩과 교류 전원을 LED가 구동되는 전원으로 전압으로 변환해주는 회로 및 heat sink가 형성된 물품.	

위 물품들은 다수의 발광다이오드(LED) 칩을 광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1절에서 언급한 발광다이오드 모듈과 기능적인 관점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구성과 형태, 용도 등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발광다이오드 모듈은 다수의 LED 칩과 다이오드로 구성된 반면, 이 물품은 다수의

LED 칩과 다이오드 이외에 정류를 위한 제어회로로 이뤄져 있다. 정류회로에 다이오드와 같은 능동소자 이외에 저항, 커패시터 등의 수동소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발광다이오드 모듈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고 전자기기(모니터 등)의 부분품인 광원으로 사용되는 반면 이 물품은 가정에서 전원에 꽂아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HS위원회는 호의 용어의 한계로 인해 이 물품이 제8539호에 분류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 없이 동의했다. 다만, 2012년 HS 기준으로 분류 가능한 호에 대해서는 크게 제8543호의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와 제9405호의 조명용 기기로 의견이 갈렸다. 정류를 위한 제어회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 물품이 발광다이오드 모듈과 마찬가지로 제8541호에 분류된다는 소수 의견이 존재했다. HS위원회는 투표 결과 이 물품은 제8543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 제8539호의 개정

제8539호의 용어 한계로 인해 주로 가정이나 사무실에 기존의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LED 램프를 이 호에 분류할 수 없음은 명확하나 제85류의 전체 맥락에서 이러한 LED 램프도 제8539호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따라 이 호의 개정 논의가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2017년 HS 개정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인 WCO의 제45차 HS 검토소위원회(2013. 5월)에서 EU는 LED 제품의 종류와 거래단계가 다양함을 들어 이들 LED 제품을 품목분류표에 적절히 특개하기 위한 개정안을 새로 제안했다.

● 2017년 HS 개정(제8539호) ●

HS 2012	HS 2017
85.39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 (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85.39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 (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 <중략> ...	... <중략> ...
<신설>	8539.5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 <후략>	...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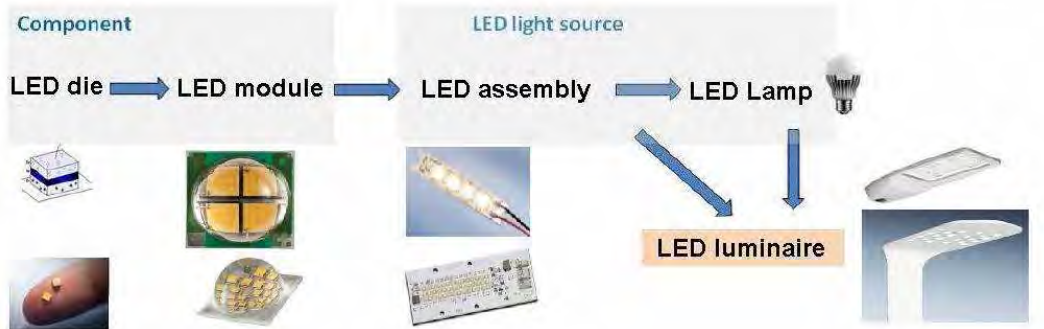
2) 2022년 HS 개정

(1) LED 광원(light source)과 관련한 품목분류표 개정 제안

LED는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칩 또는 패키지)부터 시작해 모듈, 조립품, 램프 및 조명

기구 등 다양한 단계로 거래되고 있다.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LED 또한 가정용의 소켓에 직접 갈아 끼울 수 있는 램프의 형상보다는 조명기구를 완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 부품인 모듈 형태로 훨씬 더 많이 거래된다. 그뿐 아니라 샹들리에, 전기스탠드 램프, 가로등, 서치라이트 등 완성된 조명기구로서도 폭넓게 거래된다.

● 다양한 거래 단계의 LED 제품 ●



출처 : WCO Working Document NR0948

EU는 제45차 HS 검토소위원회에 이러한 물품들의 품목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의 HS 개정안을 추가로 제시했고, 그 주요 내용은 i) LED 램프와 모듈(또는 어셈블리)을 모두 포함하도록 제8539호 개정, ii) 제8541호에 분류되는 발광다이오드(LED)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85류 주 개정 신설 및 LED를 소호 레벨에서 특제하기 위한 제8541호 개정, iii) LED만을 사용하는 조명기구와 그 밖의 조명기구를 6단위 소호 레벨에서 구분하기 위한 제9405호의 개정 등이다.

● EU의 개정 제안(LED, 제45 ~ 49차 HS 검토소위원회) ●

구분	HS 2017	개정안(EU)
제8539호	85.39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85.39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어셈블리
제85류 주	<신설>	11.4) 제8539호의 '발광다이오드(엘이디) 어셈블리'는 인쇄회로 위에 장착된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하여 빛을 발생하는 조립품을 말한다. 이들은 또한 전력의 공급이나 제어를 위해 개별능동소자, 개별수동소자 또는 제8536호나 제8542호의 물품을 포함할 수도 있다.

구분	HS 2017	개정안(EU)
	9.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를 말한다. ... <후략>	12. ⁵⁾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 -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를 말한다. - '발광다이오드'란 전기 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하는 반도체 재료 기반의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하며,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보호용 다이오드를 결합하였거나 모듈 상태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9405호	... <후략>	

EU는 우선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한 제85류 주를 개정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및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만이 아니라 발광다이오드 또한 반도체 디바이스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다수의 LED로 이뤄진 모듈 상태의 발광다이오드도 제8541호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이는 제54차 HS위원회에서 결정된 발광다이오드 모듈의 품목분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U의 개정안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부분은 여러 개의 LED 칩 이외에 추가로 능수동 부품이나 제어회로가 결합된 모듈(또는 어셈블리)의 분류 문제다. 이러한 모듈은 완성된 램프나 조명기구 형태가 아니므로 제8513호, 제8539호나 제9405호에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모듈의 기관 위에는 LED와 다이오드만이 아니라 전기제어를 위한 변환회로, IC, 커패시터 등 다양한 구성부품이 추가돼 있어 제8541호에 분류할 수도 없다. EU는 이러한 모듈을 제8539호에 포함시키도록 제8539호의 용어와 소호 체계 개정을 제안한 것이다.

검토소위원회는 제45차 회기부터 제48차 회기까지 EU의 제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큰 틀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면서도 그 전에 선결돼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우선 여러 형태의 LED 제품, 특히 여러 기기에 광원으로 사용되는 부분품 역할을 하는 제품의 명칭으로 패키지, 모듈, 어셈블리, 램프 등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제8539호, 제8541호, 제9405호 등에 각각 분류되는 LED 제품의 범위와 구분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 및 협의로 인해 개정안 논의는 큰 진전 없이 계속됐다.

4, 5) EU의 개정안에는 2012년 HS를 기준으로 주 번호를 설정했으나, 이번 호에서는 현행의 2022년 HS 기준의 주 번호로 설명함.

HS 검토소위원회 논의 중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EU는 업계, 특히 세계 반도체협의회(WSC, World Semiconductor Council) 등의 도움을 받아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정안을 발전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대폭 확장시켰고 반도체 트랜스듀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2)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의 개념과 제8541호의 확장

제49차 검토소위원회에서 EU는 앞서 논의됐던 LED 제품의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완하는 한편 종래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개념을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했다.

● EU의 개정 제안(LED와 반도체 트랜스듀서, 제49 ~ 54차 HS 검토소위원회) ●

HS 2017	개정안(EU)
제85류 주	
<신설>	11. 제8539호에서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발광다이오드(LED) 모듈’은 전기회로 내에 정렬된 발광다이오드를 기반으로 하며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이들은 또한 전력의 공급이나 제어 위하여 개별능동부품, 개별수동부품 또는 제8536호나 제8542호의 물품을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모듈은 기계적 전기적 접촉을 원활히 하고 조명기구에 쉽게 갈아끼울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캡을 갖추고 있지 않다. 나.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는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결합한 하나 이상의 LED 모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발광다이오드 모듈과 발광다이오드 램프의 차이점은 램프는 기계적 전기적 접촉을 원활히 하고 조명기구에 쉽게 갈아끼울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캡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9.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12.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를 말한다.	가. 1)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말한다 . 반도체 디바이스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능동·수동부품을 장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수 부품의 조립품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정의에서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는 반도체 기반 센서·반도체 기반 액츄에이터·반도체 기반 공진기·반도체 기반 오실레이터

HS 2017	개정안(EU)
	를 말하며 개별 반도체 기반의 디바이스로 여 떠한 종류의 물리적·화학적 현상·활동도 전 기적 신호로 바꾸거나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 인 현상·활동으로 바꾸는 기능을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디바이스를 말한다. ... <중략> ...
	2) ‘발광다이오드(LED)’란 반도체 물질에 기반하 여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 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디바이스로 서로 전기 적으로 연결되었는지에 관계없으며 보호용의 다이오드를 결합하였는지도 관계없다. 제 8541호의 발광다이오드는 전력공급이나 제 어를 위한 부품을 장착하고 있지 않다.
85.41 -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 - 반도체 디바이스(예 :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 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 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하 다), 발광다이오드(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 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장착된 압전기 결 정소자
... <중략> ...	... <중략> ...
8541.50 -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8541.51 -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8541.59 - 기타

새로운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트랜스듀서의 개념을 제85류 주에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에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견 기존의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에 반도체 트랜스듀서만 새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시된 개정안 중 제85류 주 제12호 가목 1)항의 두 번째 문장은 반도체 트랜스듀서와 무관하게 기존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검토소위원회는 제49차 회기부터 제54차 회기까지 EU의 개정안을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위의 표와 같이 개정안을 합의해 HS위원회에 상정했다. 검토소위원회 논의 도중 이 두 번째 문장의 해석이나 이로 인해 확대되는 제8541호의 범위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며 이 개정 제안은 이대로 확정돼 2022년 HS에 반영됐다.

4. 2022년 HS 제8541호의 범위에 대한 고찰

1) LED 모듈

제8541호에는 단일 칩이나 패키지 상태의 발광다이오드만이 아니라 광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수의 LED 칩이 장착된 모듈로서 LED 이외에 보호용 다이오드가 결합된 물품까지 분류 가능하다. 그러나 보호용 다이오드 이외에 추가 부품, 즉 전력변환이나 제어를 위한 회로가 포함된 것은 제외된다. 대표적으로는 AC 전압을 LED 작동을 위한 DC 전압으로 바꿔주는 정류회로 장착한 모듈이 포함된다.

제8541호에서 제외되는 LED 제품으로 조명용 기기의 부품이나 중간제품으로 사용되는 제 8539호에 포함되는 LED 모듈이나 램프를 정의하는 용어로 LED ‘광원(light source)’이라는 용어가 새로 정의됐다. 이에 따라 2022년 HS에서 LED 제품의 전반적인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2022년 HS에서 LED 제품의 분류 ●

LED Product	Chip/die 	   Decision by HSC/54 	 	 	   		
	Package  					LED Light source	LED Luminaire
	Chip on board  						
HS2022	LEDs Including assembled articles		with control circuitry		94.05		
	without control circuitry		with cap				
	85.41		85.39				

출처 : WCO Working Document NR1119

2) 반도체 트랜스듀서

(1) 반도체 트랜스듀서의 개념

반도체 트랜스듀서란 반도체 재료를 바탕으로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진 디바이스로 외부의 물리적 현상을 전기신호로 바꿔주거나 입력되는 전기신호에 따라 물리적인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통상 미세전기기계 시스템(MEMS)으로 불리는 센서, 액추에이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017년 HS 기준으로 이들 물품은 그 기능에 따라 제84류, 제85류 및 제90류의 해당 호에 분류될 수 있다.

(2) 능동소자와 수동소자

능동소자는 보통 전기적인 입력과 출력을 갖추고 있으며 입력과 출력의 관계에 따라 전기의 변환이나 증폭 등이 일어나는 전기부품을 말한다. 반면 수동소자는 증폭이나 변환과 같은 능동적 기능을 가지지 않는 소자를 말한다. HS 제8504호의 인덕터, 제8532호의 커패시터, 제8533호의 저항 등이 수동소자로 분류되며, HS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나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는 보통 능동소자로 이해된다. 그러나 2022년 HS에서 제8541호에 새롭게 포함되는 반도체 트랜스듀서는 전기의 변환이나 증폭이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센서의 경우 외부 전원이 없이도 동작하는 수동소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모듈화된 반도체 디바이스

(1) 분류상의 쟁점

제1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HS위원회의 장기간에 걸친 논의결과로 제8541호에 포함되는 반도체 디바이스가 다수 결합된 모듈 형태의 물품은 제8541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듈에 제8541호에 포함되는 물품 이외의 능수동 소자가 결합된 것은 제8541호에 배제된다는 국제적인 기준이 2022년 HS 개정 이전에 어느 정도 정립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2절에서 검토한 것처럼 2022년 HS 개정 시 반도체 트랜스듀서의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제8541호의 범위는 크게 확대됐다. 그리고 개정된 HS에서 제85류 주 제12호 가목 1)항의 두 번째 단락은 반도체 디바이스 모듈의 품목분류에 대한 모호함을 제공한다.

■ 제85류 주 제12호 가목 1)항

“반도체 디바이스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능동·수동소자를 장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수 부품의 조립품을 포함할 수도 있다(Semiconductor devices may also include assembly of plural elements, whether or not equipped with active and passive device ancillary functions).”

특히 앞서 언급한 ‘능동소자·수동소자를 장착한 다수 부품의 조립품’은 어떤 물품을 의도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개별 부품 상태의 다수의 능수동 소자로 이뤄진 조립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정의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제8541호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전자의 경우라면 이 글 머리말에서 언급한 IGBT 모듈은 제8541호에 분류돼야 하는 반면, 후자의 해석이라면 이 물품도 제8541호에 포함될 수 없다.

2022년에 개정된 HS 제8541호 해설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8541호 해설서

(III)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

이 류의 주 제12호 가목 1)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이들은 반도체 기판이나 반도체 재료가 어떠한 종류의 물리적·화학적 현상·활동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거나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현상·활동으로 변환하는 핵심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는 독립적인 기술적 유닛(unit)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공하지 않은 다이 제품(bare die product)이나 패키지(package)로 제시될 수 있다.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구성하는 부품(트랜스듀서의 구조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분리불가능하게 부착되어 있는 능동이나 수동 개별 구성부품을 포함한다)은 모든 의도와 목적상 분리불가능하게 결합되어야만 한다. 즉 이론적으로는 일부 구성부품을 제거하고 대체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제조 조건에서는 비경제적이다. 트랜스듀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반도체 기반이 아닌 구성부품은 센서(sensor)·액추에이터(actuator)·공진기(resonator)·오실레이터(oscillator)로서의 트랜스듀서의 기능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트랜스듀서의 부분품으로 허용된다. 이러한 구성부품의 전형적인 예들은 다음과 같다(그러나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개정된 제8541호 해설서의 맥락으로 제85류 주 제12호 가목 1)의 두 번째 단락을 이해한다면 앞서 주(註)의 해석 문제에서 언급한 ‘능동소자·수동소자를 장착한 다수 부품의 조립품’은 반도체 트랜스듀서를 의도한 것으로 짐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의 규정과 해설서 내용상 명백한 참조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명확한 해석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해설서의 설명이 주의 정의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

HS 검토소위원회에서의 논의 당시 제85류 주 제12호 개정안(EU의 제안)에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된 배경이나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된 바 없다. 텍스트 그대로 해석한다면 예를 들어 다수의 트랜지스터가 결합된 모듈 상태의 물품에 보조적 기능을 하는 능동소자(다이오드)나 수동소자(저항 등)가 조립된 물품도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HS 개정 연계표

WCO HS위원회는 HS 개정 시마다 신설, 삭제, 변경되는 호와 소호를 중심으로 HS 개정에

따라 이전 버전의 HS에서 새로운 버전의 HS로 어떻게 물품이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연계표(Correlation Table)를 작성한다. HS 연계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HS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호와 소호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각 회원국이 HS 개정으로 인한 자국의 관세품목분류표를 개정하는 데 참고자료가 되기도 한다.

LED 제품 및 반도체 트랜스듀서와 관련한 HS 개정으로 인한 연계표는 다음과 같다.

● 2022 ~ 2017 HS 연계표(일부 발췌) ●

2022 HS	2017 HS	비고
제8539.51호	ex 제8539.90호	제8539호에 LED 모듈을 포함한 LED 광원을 분류하도록 개정
	ex 제8541.40호	
	ex 제8543.70호	
	ex 제9405.10호	
	ex 제9405.20호	
	ex 제9405.30호	
	ex 제9405.40호	
	ex 제9405.60호	
제8539.59호	제8539.50호	
제8539.90호	ex 제8539.90호	
제8541.51호	제84류, 제85류, 제90류, 제93류, 제8541호에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제8541호에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를 포함시키도록 개정
제8541.59호	제95류 해당 소호로부터 이동	
제8541.90호	ex 제8541.90호	

2017년 HS의 소호 제8541.50호(기타의 반도체 디바이스)는 2022년 HS에서 소호 제8541.51호(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와 소호 제8541.59호(기타)로 나뉜다. 연계표상으로는 2022년 HS 개정으로 인해 제8541.51호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만이 아니라 소호 제8541.59호(기타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범위도 확대되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소호 제8541.10호의 다이오드나 소호 제8541.2호의 트랜지스터는 HS 개정에 따른 범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연계표상으로 본다면 앞서 언급한 제85류 주 제12호 가목 1)항의 두 번째 문장은 제8541.59호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모듈화된 반도체 디바이스로서 제8541호의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이외에 수동소자가 장착된 물품은 소호 제8541.59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3) WCO 분류의견서

WCO HS위원회에서 품목분류 결정된 물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류의견서(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에 등재된다. 분류의견서에 등재하는 내용은 HS위원회 결정사항을 바탕으로 하며 WCO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즉, 분류의견서에 등재된 내용은 해당 물품에 대한

WCO의 공식적인 권고안의 지위를 가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청은 정기적으로 WCO의 분류의견서 내용을 국내법(고시)으로 수용⁶⁾하는 절차를 거친다.

HS위원회는 HS 개정에 따라 기존 등재 건의 HS 품목번호가 바뀌는 경우 새로운 버전의 HS를 기준으로 품목번호를 변경해 검토한다. 예를 들면 이 글의 제3절 첫머리에 언급한 LED 램프는 2014년 분류의견서 등재 시에는 소호 제8543.70호에 포함됐으나, 2017년 HS 개정에 따라 소호 제8539.50호로 변경됐으며, 2022년 HS 개정에 따라 소호 제8539.52호로 재변경됐다.

또한 2017년 HS 개정 시 제8542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복합부품 집적회로(Multi-component IC) 개념이 새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모노리딕 집적회로, 트랜지스터, 저항 등으로 구성돼 기존 결정에 따라 분류의견서 제8504호에 등재돼 있던 파워모듈(power module)은 제8542호로 이동됐다.

2021년 4월, 제67차 HS위원회는 분류의견서 등재 물품 중 2022년 HS 개정에 따라 HS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품목과 관련한 분류의견서 수정을 검토했다. 제1절 머리말에서 언급한 절연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6개의 트랜지스터, 6개의 다이오드, 3개의 저항으로 구성)는 최초 HS위원회에서 논의 시에는 제8504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2022년 HS 개정에 따른 변경 여부 검토 시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즉 HS위원회는 개정된 제85류 주 제12호 가목의 규정이 이 물품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이 물품은 ‘보조적 기능을 하는 능동소자(다이오드)와 수동소자(저항)를 결합한 다수의 트랜지스터 조립품’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에 따라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남아 있다.

5. 결론 및 제언

1) 반도체 조립품과 관련한 제8541호의 범위 해석

앞서 제2절에서는 WCO HS위원회의 품목분류 논의를 중심으로 2022년 개정 이전의 HS 제8541호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 등의 반도체 디바이스가 포함되는데, i) 이러한 물품이 개별 칩이나 웨이퍼 상태 또는 패키징된 형태로 제시된 물품이나 ii) 제8541호에 포함되는 반도체 디바이스가 둘 이상 결합된 모듈 상태의 물품도 포함하되, iii) 제8541호에 포함되는 물품 이외의

6)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것, 즉 다른 호에 포함되는 수동소자나 제8542호의 집적회로가 결합된 물품은 제8541호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제3절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2022년 HS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LED 제품의 품목분류 명확화 문제와 그로부터 파생된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와 관련한 제8541호의 범위 확대 경과를 검토했다.

HS 검토소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근거로 판단한다면 2022년 HS에서 제8541호의 개정 목적은
i) 제8541호를 포함해 각 호에 달리 분류되는 LED 제품의 범위와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ii) 반도체 트랜스듀서를 반도체 디바이스의 범위에 포함해 제8541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4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HS 개정 연계표와 HS 개정에 따른 분류의견서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제8541호에 분류되는 다수의 반도체 디바이스에 다른 호에 포함되는 수동소자를 결합한 조립품’까지 제8541호에 포함하기 위한 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와 관련된 주(Note)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주의 문구 자체에 대한 문리적인 해석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85류 주 제12호의 문구 자체로 보면 제8541호의 범위를 확대 해석할 근거와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는 향후 국내외에서 반도체 조립품의 품목분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이 주제를 국제적인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2) 제8541호 범위의 모호성에 따른 대응 방안

앞서 말한 것처럼 제8541호의 문구 해석에 관한 국가 간의 입장 차이로, 혹은 업계와 관세당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향후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품의 품목분류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하다.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제8541호 범위 해석에 대한 국제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WCO HS위원회에 제85류 주 제12호의 해석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HS위원회 상정 안건의 구성 ●

쟁점	주요 내용
제85류 주	- 제85류 주 제12호 가목 1)항의 두 번째 문장의 의도 - 주에서 언급한 수동소자의 범위
HS 개정연계표	- 기타 반도체 디바이스의 범위 확대 여부 - 제8541.2호의 범위 변경 여부
분류의견서	- 현행 분류의견서 제8504.40/2번 물품의 재검토 필요성 • IGBT와 다이오드, 저항으로 이루어진 모듈이 위의 규정에 따라 제8541호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재분류할 경우 이 물품이 제8541.29호의 트랜지스터로 볼 것인지, 제 8541.59호의 기타의 반도체 디바이스로 볼 것인지 여부 • 이 물품이 제8504호에 분류되는 경우 제85류 주 제12호 가목 1)항의 두 번째 문장에 포함된 ‘수동소자’의 정의
기타	제85류 주의 추가 개정 여부

앞서 언급한 쟁점들이 HS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정리된다면 제8541호 범위 해석의 모호성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은 HS 협약의 전 세계적인 일관된 해석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지금까지 HS 개정 과정에 여러 차례 기여한 바 있다. 이 글에서 제기한 문제를 바탕으로 한국이 차기 HS 개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녹차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차’는 찻잎을 가공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분류로 나뉜다. 중국에서는 백차, 녹차, 홍차, 청차, 흑차, 황차 여섯 가지로 분류하는데, 우롱차와 보이차는 각각 청차와 흑차에 속한다.

이러한 차를 분류하는 기준은 산화 여부, 산화 정도, 발효 여부다. 예를 들면 산화를 완전히 억제시킨 비산화차인 녹차, 산화를 100% 진행시킨 완전 산화차인 홍차, 산화 정도가 10 ~ 70%로 부분 산화차인 청차(우롱차), 미생물의 발효과정을 거친 후발효차인 흑차(보이차), 경미한 발효 과정인 ‘민황(悶黃)’을 거친 황차 등이다.

백차(白茶)는 가장 최소한의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찻잎을 자연건조하거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팬을 사용해 건조해 생산한다. 최고 품질의 백차는 가격이 높은 오직 새싹만으로 만든다.

녹차(綠茶)는 산화 과정을 인위적으로 억제시킨 비산화차로 생산된다. 중국에서는 산화를 일으키는 산화효소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찻잎을 불에 달궈진 솥에 덮는 ‘초청’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뜨거운 증기로 가득한 원통에 찻잎을 넣고 찌는 ‘증정’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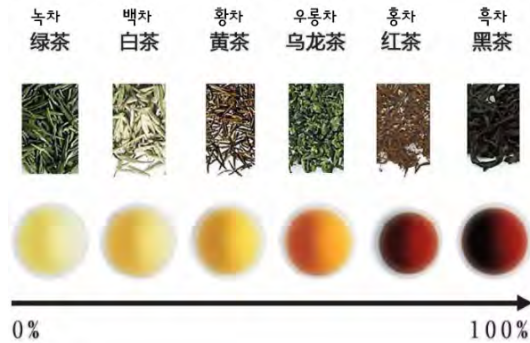
황차(黃茶)는 찻잎을 축축한 천으로 덮은 상태에서 증기를 꽤 찻잎 온도를 높이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 과정에서 효소 산화가 약하게 일어나 찻잎과 이를 우린 차 빛깔이 노란색을 띠게 된다.

청차(靑茶)는 부분 산화차로, 우롱차가 대표적이다. 찻잎을 비비거나 굴리는 성형에 앞서 부분 산화를 거쳐 만든다.

홍차(紅茶)는 찻잎을 100% 산화시켜 만든 완전 산화차다. 보통 습도는 80 ~ 90%, 주위 온도는 22 ~ 23℃를 유지한 상태에서 찻잎을 완전히 산화시킬 수 있다.

흑차(黑茶)는 미생물 발효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대표적인 흑차로는 보이차가 있다.

● 발효 정도에 따른 차물 색상 비교 ●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파쇄상의 건조 잎과 줄기의 혼합물을 플라스틱 팩에 소매 포장한 것으로 ‘발효차’인 제0902.30-0000호로 신고됐다.

관세율표 제0902호에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0902.30 호에는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를 분류한다.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leaf)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 홍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숙한 엽을 불에 쪄이거나 건조시키기 이전에 뭉개지고(rolled) 발효되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차류는 ‘발효’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가 나뉘며, 발효한 홍차와 발효되지 않은 녹차의 세율차이는 437.6%로 세율차가 크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차류를 품목분류 하기 위해서는 관능, 육안관찰, 제조공정 및 실험적인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판단을 근거로 분류해야 한다.

본 물품의 정밀 분석 결과 해당 물품은 ‘발효차’가 아닌 ‘녹차’로 분류됐다. 따라서 파쇄상의 녹차를 소매 포장한 것으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이고 내용물에 직접 접해 포장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902.10-0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BLACK TEA (FERMENTED)	0902.30-0000 (A 40%)	Green tea(not fermented),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ing 3 kg	0902.10-0000 (W2 513.6%)

스프레이형 거품 세제 ‘폭발 위험’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 관세사

어린이나 아기들이 목욕할 때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거품 세제(버블 클렌저)는 분사제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버블 클렌저의 경우 실내 목욕탕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액화석유가스가 축적되고 전기 스파크가 튀면 화재와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40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 대상 40종 모두 분사제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화석유가스는 버블 클렌저를 분사했을 때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고, 실내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쌓이게 된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전기 스파크와 같은 불꽃이 튀었을 경우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밀폐된 장소에서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를 분사한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에서 액화석유가스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 분사 후,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각각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하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버블 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제조·판매사업자에 액화석유가스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관련 부처에는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을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율표에서는 이와 같은 목욕용 제품의 경우 제3307호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탈취제’에 분류된다. 단, 조제 세제와 조제 청정제 등은 제3402호에 분류된다.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 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13호_2025.1.6.

최신개정법령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공포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경제 및 기술 협력)에 따른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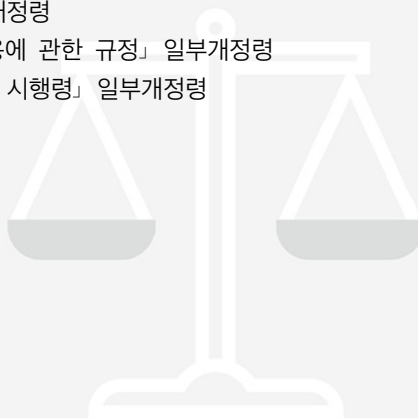
법률

-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

대통령령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 내용은 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입법예고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본 내용은 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공포

(조약 제2595호, 2024.12.26.)

2023년 7월 18일 제2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9월 7일 자카르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1월 14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4년 12월 3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전문 생략

※ 전문, 한국관세양허표, PREAMBLE, Tariff Schedule of Korea : www.custracom.com 참조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경제 및 기술 협력)에 따른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공포

(조약 제2596호, 2024.12.26.)

2023년 7월 18일 제2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9월 7일 자카르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과 동일한 2024년 12월 3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경제 및 기술 협력)에 따른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전문 생략

※ 전문 : www.custracom.com 참조

법률

■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20608호, 2024.12.31.)

◇ 개정 이유 ◇

-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최빈(最貧)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며,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관세자료의 제출기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

- 가.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의 신설(제9조 제4항 및 제38조의5 신설)
- 1) 성실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실납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2) 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제21조)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종전에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7년으로 연장함.
- 다.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 상향(제42조 제2항)
-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종전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함.
- 라.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제76조 제3항)
- 종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도 해당 관세를

적용하도록 함.

- 마. 수출·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확대(제235조 제1항 제7호 신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
- 바.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 마련(제254조 제2항·제7항·제8항)
- 1)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2) 해당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3) 통신판매업자 등의 등록은 폐업한 경우, 사망한 경우 및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 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추가(제264조의2 제7호 신설)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 아.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제270조의2 제2호)
중전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과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을 추가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함.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6조 제3항의 개정규정 : 2025년 4월 1일
 2. 제222조 제1항 제7호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 : 2026년 1월 1일
 3. 제9조 제4항, 제38조의5, 제39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 제2조(성실납세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4항, 제38조의5,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 제3항의 개정규

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창고의 장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창고에 장치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장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2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출입신고필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48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27조 제2항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장부 등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장부 등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내국운송 신고 대상 내국물품의 장치 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21조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한 내국물품의 장치 장소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로서 2026년 1월 1일 당시 그 등록의 유효기간(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에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관세법」 제38조 제3항”을 “「관세법」 제38조 제4항”으로 한다.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의 제목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 본문 : www.custra.com참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20616호, 2024.12.31.)

◇ 개정 이유 ◇

-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개정 이유 ◇

- 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범위 확대(제9조제2항)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적용 대상 확대(현행 제31조제1항 단서 삭제,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1)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기재한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그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다.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의 상향 조정(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 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같은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한 날
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가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 고지를 받은 날

제3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사전심사서”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이 법 시행 이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20624호, 2024.12.31.)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고, 그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 제목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한다.

제70조 제2항 제1호 자목 중 “강화”를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로 한다.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한다.

대통령령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125호, 2024.12.31.)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4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3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 www.custra.com 참조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124호, 2024.12.31.)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 분야 지원 확대를 위해 반도체 제조용 유리섬유, 나프타 제조용 원유 및 천연가스 등 55개 품목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식품원료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코코아두 및 커피농축액 등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부터 별표 1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1, 2, 3, 4, 5, 6 : www.custra.com 참조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126호, 2024.12.31.)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하는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通關) 업무의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다 및 별표 3의 라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양허관세 등이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다 및 별표 3의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다 및 별표 3의 라 : www.custra.com 참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120호, 2024.12.30.)

◇ 개정 이유 ◇

□ 2023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 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하는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통관(通關) 업무의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 가.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제2조 제23항 및 별표 17의8 신설)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 나.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6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리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제21조 제24항, 제23조 제1항 제19호, 제23조 제2항 제21호 및 제23조 제3항 제21호 신설, 제25조 제2항 및 제27조)
 -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하도록 함.
 - 2) 기획재정부장관은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총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3) 기획재정부장관은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필리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라.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제30조 제1항 제9호 및 별표 24의3 신설)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 발동물량·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 마.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2항제4호 신설, 제33조제1항·제6항·제7항·제11항 및 제34조제2항·제7항·제8항)
무역위원회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을 필리핀에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 사실 또는 보조금 지급 사실 등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에 가격수정 또는 보조금 철폐 등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12.5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7까지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번호 및 품명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7까지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8까지 생략]

[별표 24의3]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9호
관련)

바나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803.90.0000호)

이행연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22,687	325,687	328,687	331,687	334,687	337,687
특별긴급관세율(%)	30	30	30	30	30	27
이행연도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40,687	343,687	346,687	349,687	해당없 음	
특별긴급관세율(%)	24	21	18	15	0	

※ 본문 : www.custra.com 참조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127호, 2024.12.31.)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하는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通關) 업무의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혜대상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별표 2 : www.custracom.com 참조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128호, 2024.12.31.)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하는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通關) 업무의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별표 : www.custra.com 참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113호, 2024.12.27.)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2023년 9월 7일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필리핀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대상 국가에 추가하고, 무역위원회는 필리핀공화국을 대상으로 잠정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의 입수 방법과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무역위원회는 필리핀공화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한 경우에는 필리핀공화국을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하도록 하고, 해당 건의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리핀공화국을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필리핀공화국

제24조제12항 중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 또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5.4조”를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5.4조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4조”로, “캄보디아 또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캄보디아·인도네시아공화국 또는 필리핀공화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필리핀공화국

제24조의2제1항 중 “이스라엘 및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이스라엘·인도네시아공화국 및 필리핀공화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판정의 대상 국가가 필리핀공화국인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해야 한다.

제24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필리핀공화국을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

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094호, 2024.12.31.)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등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46개 물품에서 고속 연사기 등 8개 물품을 제외하고, 방사기 등 4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2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관세 감면율을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2호가목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100분의 7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제2호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2의4 : www.custra.com 참조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100호, 2024.12.31.)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한 684퍼센트의 특별긴급관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적용하되, 그 기준발동물량을 654,995톤에서 440,236톤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별표 1 : www.custra.com 참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095호, 2024.12.30.)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2023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 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호주, 일본 또는 뉴질랜드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12.5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항 제15호의2, 제15조 제19항 제2호, 별표 15의7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본문, 별표 : www.custra.com 참조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101호, 2024.12.31.)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팔·녹두 등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4,694톤에서 23,099톤으로 늘리는 등 15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별표 : www.custra.com 참조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428호, 2024.12.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0호, 2024.12.26.)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자유무역협정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까지 확대하고,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기술·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20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53호, 2024. 12. 10. 공포, 202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의 제목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조 제1항”을 “제1항”으로, “담당 공무원은”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술·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영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무역조정계획”을 “통상변화대응계획”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을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로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 통지서”를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직인란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인란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2호·4호·5호·5호의2·5호의3·6호·7호·8호·9호·11호·12호서식 : www.custra.com
참조

고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4-72호, 2024. 12. 2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8조 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규칙 별지 제24호의11 서식(필리핀과의 협정) :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제28조

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필리핀과의 협정 : 선적일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제34조 제3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규칙 별지 제24호의11 서식(필리핀과의 협정) : 제12란(Certification)에 날인

제35조 제3항 제1호 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회원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캄보디아와”를 “아세안회원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캄보디아, 필리핀과”로 한다.

제35조 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필리핀과의 협정

별표 3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협정의 종류	선적 후 발급 스탬프
인도와의 협정	“ISSUED RETROSPE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이스라엘과의 협정	
싱가포르와의 협정	“ISSUED RETROA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협정의 종류	선적 후 발급 스탬프
베트남과의 협정	
중국과의 협정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캄보디아와의 협정	
필리핀과의 협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필리핀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4-74호, 2024. 12. 31.)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령」제99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 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안내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4-76호, 2024. 12. 2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23-67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별지 게재 생략, 관세무역정보 2113호 부록 참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입법예고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20호, '23.4.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5.1.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명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20호, '23.4.12)

2. 개정 사유

- 화주의 권리 보호 및 업무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안전성 검사를 목적으로 채취한 견본품의 관리(반환·보관·폐기) 규정·절차 정비
- 불필요한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분석검사 대상 및 분석실 관할 구역을 명확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수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 협업검사센터장의 선별기준 요청 사유에 대한 제한 삭제(제14조)
 - 현장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협업검사센터장이 선별기준 적용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한 삭제
- 안전성 분석 대상 및 분석실 관할 구역 명확화(제16조)
 - 분석검사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 문구(“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고 분석 대상 물품을 명확하게 규정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수행규칙」 개정 및 인천세관 안전성 분석실 신설에 따른 분석 업무 관할 구역 명확화

□ 견본품 관리 규정 및 서식 마련(제20조, 제20조의2, 별지 제5호서식)

- 안전성 검사에 사용한 견본품을 화주 등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반환 예외 사유를 마련하고 견본품 보관 사유 확대*

* (현재) 부적합물품, 사후확인 필요, 기타 → (확대) 불복제기, 의뢰 부서의 요청, 반환의사 불확실

- 반환 대상 견본품에 대한 폐기 사유* 및 폐기 시 조치 의무 규정

* 반환 거부, 보관기간 경과, 기타 협업검사센터장의 필요성 인정

- 견본품 관리 강화를 위해 보관장소 기준 및 관리대장 서식 신설

□ 기타 개선 필요사항 반영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띄어쓰기·주술호응 등 문법 오류 및 어려운 용어 수정), 인용 법령·조문 변경사항 반영

4. 시행 일자 : 2025. 01.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와
- 담당자 : 남우현 사무관(042-481-7841), 성지은 주무관(042-481-7828)
- 제출기한 : 2025. 1 .13.
- 제출방법 : 전화 또는 메일(sammun@kora.kr)

■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356호, '2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5.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2356호, '24.10.31.)

2. 개정 사유

- 중부권 관세조사 공백 해소를 위해 평택세관의 관세조사 역할을 확대하고 제반 절차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평택세관 관세조사 역할 확대(제5조의2)
 - 비정기 관세조사대상을 사전세액심사대상건에서 '전체'로 확대
- 관세조사 절차 마련(제50조, 제52조, 제53조의2)
 - 평택세관에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관세조사에 따른 체납방지를 위한 절차 마련

4. 시행 일자 : 2024. 12.00.

5. 의견제출

- 제출처 : 관세청 기업심사과
- 담당자 : 문아영 사무관(042-481-7656)
- 제출기한 : 2025.1.9.
- 제출방법 : E-mail(ahyoung101@korea.kr), Fax(042-481-798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기업심사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간 도서



2024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수출입 통관 업무의 백과사전

세율 및 개정 고시 반영, WTO1가 수록기준 변경, 간이징액환급률표 등 수록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 상·하권 p.4,984 | 120,000원



2024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2024년 4월 1일 기준 개정 법령 수록, 관련 고시까지 한 눈에 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 p.1,728 | 60,000원



무역금융범죄의 사이클

무역금융범죄 139개 유형 심층분석

이호능·천홍욱·황인욱 공저 | p.590 | 40,000원



2023 관세환급실무

관세환급 실무중심 사례 소개

윤철수·이상학 공저 | p.603 | 50,000원



2023 관세형사법

관세무역 적법절차 준수 지침서

박영기·조재웅 공저 | p.896 | 60,000원

온라인 도서 구매 10% 할인

구매문의

02)3416-5112

온라인 구매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서비스

— 2024년 12월 오픈! —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